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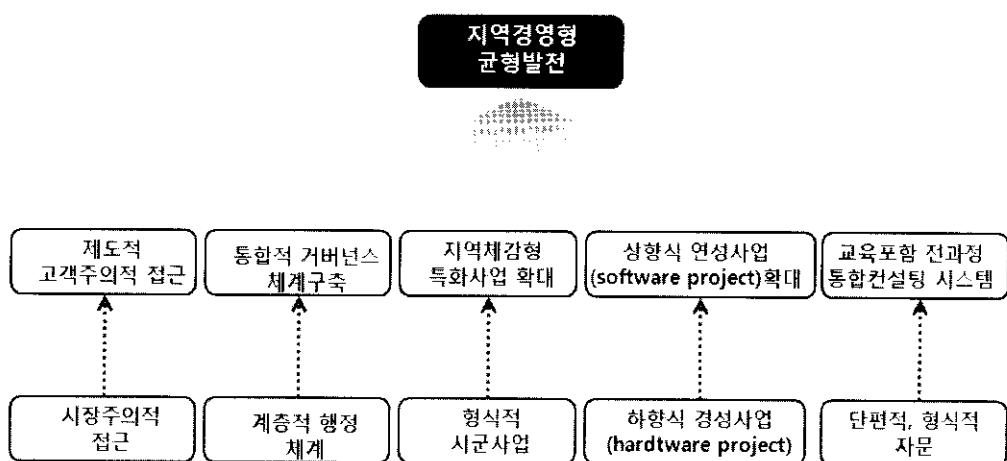
V.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1.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1.1 기회의 균형과 지역경영형 균형발전 정책

- 2차 자료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에서 분석된 충북도내 균형발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 i) 경직되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 ii) 도 차원 부서 간 협조 및 조정체계 미흡
 - iii) 시·군차원의 부서 간 업무 협조 및 조정 미흡
 - iv) 하드웨어 사업위주의 지역특성의 반영 미흡
 - v) 하향식 추진체계로 인한 시·군의 역할 모호
 - vi) 주민참여의 부족
- 충북균형발전은 단순히 시군간 균일화된 개발(equalized development)이 아닌 지역 특성이 반영되는 특화된 균형발전(specialized balanced development)을 추구함이 타당하며,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기반위에서 충북의 총 생산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동시에 모든 지역민들이 충북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접근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낙후지역의 소외의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성장, 고용 및 시·군간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는 지역경영형 균형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시·군간 연계사업, 예상되는 시·군통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고,
- 이러한 맥락에서 i) 대안적 지표로서 1인당 GRDP, 실업률 등을 낙후지역 평가 반영, ii) 제도 지원 방식의 개선, iii) 도-시군-전문가-지역주민 참여의 실질적 확대, 및 시·군 협력 활성화 및 특화사업 발굴의 확대가 요구됨



〈그림 V-1〉 균형발전 전략의 기본방향

2. 지역균형발전 5대 전략수립 방향

■ 시장주의 접근 보다는 제도적 고객주의적 접근

- 낙후지역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이 성장하는 도시지역보다 미흡하며, 충북도 및 시·군의 지원 사업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움
- 따라서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낙후상태가 심한 시·군 일수록 추가적 지원을 검토하는 제도적이고 고객 주의적 접근이 더욱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분권에 기초한 상향식 발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계층적 행정시스템보다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구축

- 충북도 차원에서 낙후지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통합적 협력 및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와 시·군간 관련 부서의 책임성과 권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즉, 전통적, 계층적 행정구조로는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군-민간(전문가 그룹 포함)이 참여하는 통합적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 간 진정한 파트너쉽이 구축되어야 함
- 특히, 형식적 절차로서의 공청회 및 관례적 주민의견 수렴을 지양하고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중심의 제도화된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특히 낙후지역의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시군·도 간 자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함
- 민간부문 자원을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방식을 검토하고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휴양, 관광부문 등에서 민자사업을 활성화함
-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시 관련 인허가 간소화, 규제완화, 인센티브 (조세감면, 토지확보) 부여 등을 강구하고, 공공·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낙후지역(농촌)개발 법인 설립을 검토함
- 시·군간 실질적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재원과 개발기회를 둘러싼 시·군간 과도한 경쟁 및 대립을 사전에 조정하고, 광역차원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행정단위 위주의 분산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함

■ 형식적 시군사업보다는 지역체감형 특화사업 발굴

- 사업대상지역의 구체적 장소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역적 특화(territorial specialization)를 추구하고 유사 사업비의 중복수혜를 최소화함

- 영역적 특화 및 장소 패키지식 특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상향식으로 수렴 반영하고,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도 시·군별 형평성 보다는 사업 차별성(특이성), 타당성(사업 실현성) 및 경제성 측면을 강조함

- 하향식 시설위주 사업에서 상향식 프로그램중심 사업 확대
 - 낙후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장소자산의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프로그램 중심의 자원활용 극대화가 요구됨
 - 즉, 농촌이 보유한 고유한 문화, 지식, 기술, 감성, 창의 등 소프트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프로그램 중심 연성사업은 시·군, 읍면이 창의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여기에 맞추어 실행함으로써 실질적 시·군 주체의 상향식 사업이 되도록 함

■ 단편적, 형식적 자문에서 통합컨설팅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발전연구센터, 분야별 전담자문가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별 도·시군·지역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호학습의 혁신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신발전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감
- 동시에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실행하여온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계획실행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고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컨설팅 시스템으로 전환함
- 이를 통해 중복사업의 비효율성 배제, 사업타당성 제고, 일관된 평가 및 모니터링, 지역주민의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영형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3.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공간구조 구축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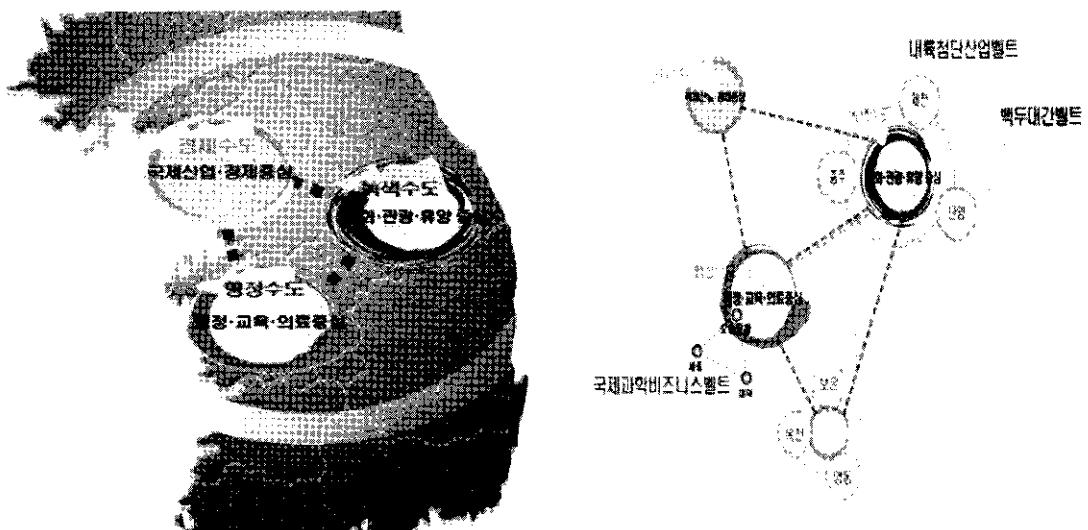
1) 기본전제

- 과거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갈등구조를 탈피하고자 정부는 정부부처와 정부출연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대외개방형 국토전략은 해안 중심형 개발의 촉진을 통해 내륙의 발전 잠재력을

14) 공간구조 구축은 『충청북도종합계획 2011~2020』의 내용을 반영함

저하시킴에 따라 내륙권 발전을 위한 통합적 연계전략 마련이 요구됨

- 전 국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내륙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대외개방형 국토 전략을 견인하고 내륙권 광역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음
-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산업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대전, 청주(오송) 등은 행정수도, 녹색성장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호수 및 산림자원의 보고인 충주호와 백두대간(월악산, 소백산) 일대를 녹색수도로 육성하는 내륙삼각발전축을 설정하여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을 지원하고 견인할 수 있는 내륙권 발전전략이 동시에 필요함



〈그림 V-2〉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내륙삼각 발전축 구상도

- 이러한 수도권~충청권 연계 삼각축 구상의 실현을 통해 수도권 및 세종시권 발전축과 대응하는 내륙발전축 형성이 가능함

2) 발전축 설정

■ 신성장동력발전축(솔라밸리육성축)

- 초광역 개발축인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연계된 신성장동력발전축을 육성
 - 청주(오송·오창·청주공항)-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솔라밸리 개발축
 - 경제자유구역 3개지구(바이오밸리,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의 조속한 운영 필요

■ 균형발전축(녹색생태보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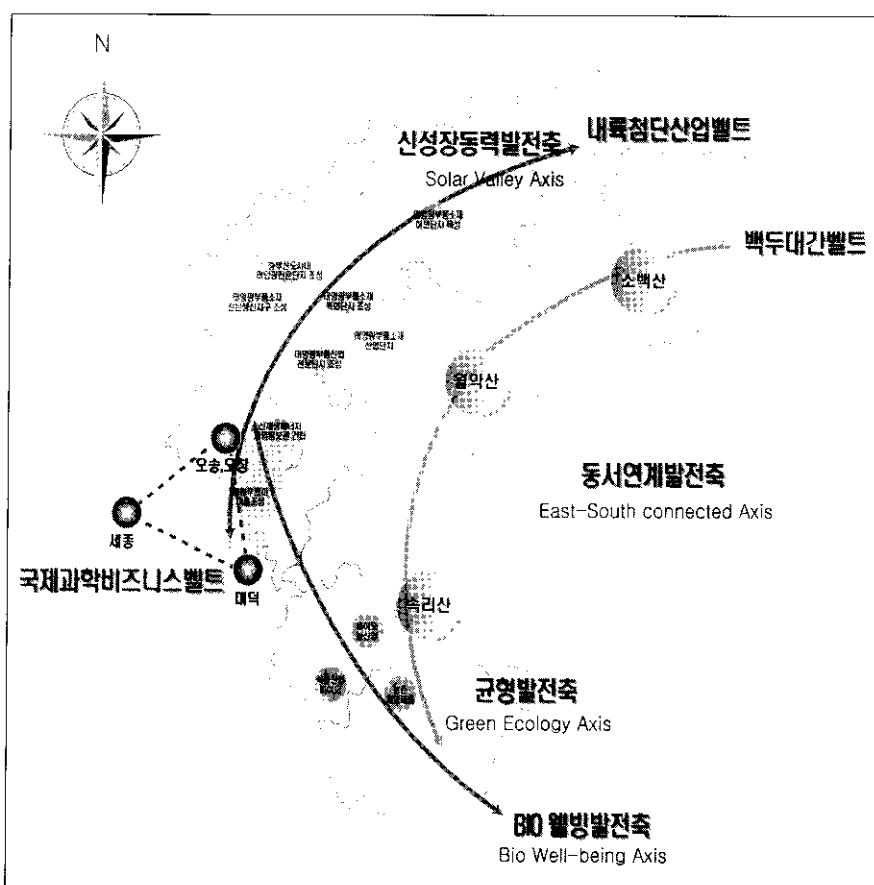
-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축
- 내륙관광 휴양지대의 특화발전을 위한 관광여가 발전축
 - 중원문화의 역사성과 백두대간의 생태성을 융합하는 생태역사벨트축

■ BIO 웰빙발전축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균교농업 배후지역의 개발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BIO 웰빙발전축 육성
 - 옥천의 의료기기단지, 보은의 대도시 균교형 농업특화지구, 영동의 문화와 과일산업이 융합된 특화지구로 육성

■ 동서연계발전축

- 내륙삼각발전축의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이 서측의 해양지향형 개발축에서 동쪽의 내륙지향형으로 이동 필요
 - 서·동해안 초광역벨트와 연계한 내륙발전 육성축
 - 도내 균형발전축과 신성장동력발전축을 연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



〈그림 V-3〉 발전축 설정

4. 권역별 발전방향¹⁵⁾

1) 남부권(보은·옥천·영동)

- 갈등의 양상으로만 나타난 영호남과 충청권이 통합할 수 있는 영호남 융합권 협력지구 구축을 통해 백두대간 허리축의 낙후된 내륙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
 - 지형, 역사, 산업,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지역별 개성화를 추구하고, 지역의 교류 촉진을 위해 지역간 연대축이 형성되도록 개발방향 설정
 - 지역간 연계 관광코스 개발, 지역축제의 공동개최 및 상호협조, 특산물의 공동 판매, 관광홍보단의 공동제작,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
 - 관광 배후도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를 거점화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고 및 특화개발 유도



<그림 V-4> 영호남 융합권 협력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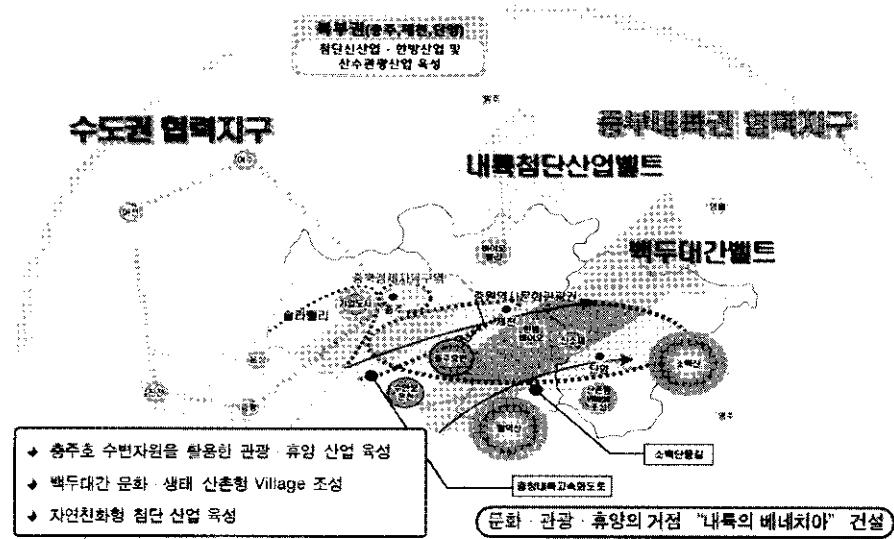
2) 북부권(충주·제천·단양)

- 국제적 산악·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구축
 - 중부내륙권의 울창한 산림, 수려한 경관과 수변자원,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 온천자원, 고유의 인적·문화적 토양 등을 연계시켜 국제적인 관광 거점육성
 - 국가 및 도 차원의 관련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감안하고, 개발목표의 단계적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적 관광개발사업의 전개
 - 국제적인 산악·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악과 역사문화, 수변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15) 권역별 발전방향은 『충청북도종합계획 2011~2020』의 내용을 반영함

○ 내륙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육성

-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특정지역, 지방광역권 지정·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개발계획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만성적 낙후지역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21세기 내륙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함



〈그림 V-5〉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3) 중부권(진천·음성·괴산·증평)

- 수도권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신 지역발전축을 형성하고 수도권의 개발효과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충북의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와 연계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토의 연결지대로서 지역간의 연계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공항을 중심으로 다종(多種)·다층적(多層的)인 교통·물류 기반 조성
- 도시간의 광역적 교류를 추구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재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측면과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하드웨어적 측면을 동시 검토

수도권 협력지구

총괄성장의 거점 "아시아 슬리밸리" 육성

중부권(단천, 을성, 폐산, 중부)
태양광산업 및 풍력산업기반
중복성장거점 육성

- 태양광독화단지 및 슬리밸리 육성
- 중부신도시 조성
- 유기농 푸드밸리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농축산 육성

부두대간권 협력지구

〈그림 V-6〉 수도권 협력지구

4) 청주권(청주·청원)

- 세종시와 충북의 관문기능을 하게 될 오송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대전광역시, 청주시간 공동협력지구 구축을 통해 내륙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지역에 입지한 특성화 대학, 토지자원, 인적·문화적 토양 등을 활용한 청정·첨단산업의 기반 조성
 - 전국 및 도 차원의 산업입지계획을 감안하고, 첨단화·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에 중점을 둔 입지전략 수립
 -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시에 생산·연구·주거·문화 및 유통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한 복합단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 및
국토의 주류발전축 육성

300만 그린 광역권 조성

- 오송첨복+생명과학+KTX역세권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밸리 조성
- 청주공항활성화 및 MRO 조성
- 세종시와 대전권·청주권의 300만 그린광역권 조성

〈그림 V-7〉 세종·대전권 협력지구

5. 시군별 발전방향¹⁶⁾

1) 남부권(보은·옥천·영동)

(1) 보은군(향토문화관광산업 중심지역)

■ 기본목표

- 국토의 중심, 사통팔달의 교통망 : 균형보은
- 생산과 물류의 거점 : 활력보은
- 관광과 휴양의 중심 : 관광보은
- 청정환경 보존과 인간 존중 : 패적보은

■ 발전방향

- 대전~충북~경북을 잇는 Clean Triangle의 중심 조성
- 미래지향적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 전통문화 육성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개발
- 생산적 복지실현과 청정환경 보전

(2) 옥천군(친환경 과학영농특화 및 산업·물류 중심지역)

■ 기본목표

- 첨단과학기술산업과 지식정보화 농업의 거점도시
- 패적성이 으뜸가는 생명의 환경도시
- 자연과 전통 역사문화가 생동하는 테마형 관광도시
- 생산과 물류유통의 중심도시

■ 발전방향

- BINT 등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토대 구축
- 지식정보화과학영농 중심도시의 기반 구축
- 행정도시권 및 대도시권역과 연계한 발전기반 구축
- 세계적 향토 역사문화의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 인간 중심의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확립
- 교통과 국토면적의 중심체적 역할제공 소재 개발

16) 시군별 발전방향은 『충청북도종합계획 2011~2020』의 내용을 반영함

(3) 영동군(생명 문화의 고장 영동 실현)

■ 기본목표

- 인간을 존중하는 고장
- 청정자연이 생명력을 키우는 고장
- 생명산업이 육성되는 고장
- 미래에 살고 싶은 건강한 고장

■ 발전방향

- 사회 소외계층 수용으로 복지사회 구현
- 자연 및 인공환경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 청정자원 생태공원화,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산업의 지식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신지식산업 육성
-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로 첨단기술산업 성장 촉진
-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 인간중심의 문화터전으로 건강한 영동 구현
- 주요 개발사업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
- 농촌주변지역의 특성화된 정주체계 확립

2) 북부권(충주·제천·단양)

(1) 충주시(내륙산업벨트의 중심도시)

■ 기본목표

- 첨단산업 중심도시
- 친환경 명품농업 도시
- 매력있는 문화관광 도시
- 차별없는 평생복지 도시
- 창의적 인재양성 도시

■ 발전방향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심도시
- 앞서가는 친환경명품농업 육성
- 매력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 건설
- 차별없는 평생복지 실현
-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

(2) 제천시(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 건강휴양 도시)

■ 기본목표

- 지식정보화 시대의 미래형 한방바이오산업도시
- 친환경 관광개발을 통한 웰빙·체험형 관광휴양도시
- 유구한 역사와 중원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 체계적 복지시스템을 갖춘 능동적 복지도시
- 중부내륙권 중추거점 물류유통도시
- 국토 동축연결 중심의 철도거점도시

■ 발전방향

- 제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식·고부가가치형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 수도권과 경남권 연결 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철도산업 육성
- 천혜의 산수자원을 활용한 웰빙·체험형 관광산업 육성
- 제천의 특색있고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정비 확충
-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유통도시 기반 확충
- 자연순환형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 정보·인적 인프라 확대로 U-지식정보도시 기반 구축
- 청풍호반 주변지역의 복원과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가속화
- 농촌지역 기반시설 및 녹색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한 잘사는 농촌 실현

(3) 단양군(친환경관광전문도시 단양 조성)

■ 기본목표

- 깨끗한 단양(Clear) 행정도 환경도 깨끗한 단양
- 신나는 단양(Lively) 전국 제일의 레저스포츠 체험관광지 단양
- 마음편안 단양(Easeful) 군민과 내방객이 마음 편한 웰빙 단양
- 체류하는 단양(Abide) 먹고, 자고 가는 체류형 리조트 단양
- 자연그대로 단양(Natural) 체험하며 즐기는 자연휴양지 단양

■ 발전방향

- 수변공간 활용 관광상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류체험형 전문관광도시 건설
- 체험을 통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및 삶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하고 싶은 휴양레저관광도시 개발
-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 관광자원화 하여 중부내륙권 거점형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
- 단양의 청정자원과 풍부한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산악 및 수변 휴양공간을 주거복합형으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주말 관광객 유치
-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관광 등 환경친화형 생태관광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발전 도모
-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확대
-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농촌관광의 구현

3) 중부권(진천·음성·괴산·증평)

(1) 진천군(생명존중 건강도시, 역동적인 생거진천)

■ 기본목표

- 꿈이있는 명품교육도시
- 함께하는 생거문화도시
- 생거특화 산업육성도시
- 참여하는 건강복지도시
- 조화로운 생태환경도시
- 군민감동 열린행정도시

■ 발전방향

-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명품 교육 기반 조성
-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건강한 경제기반 조성
- 누구나 평등한 건강한 복지기반 조성
- 자연과 군민이 어우러지는 명품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능동적·창조적 열린 행정 체제 조성

(2) 음성군(그린토피아 청정농산업 중심지역)

■ 기본목표

- 군민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 지방자치 실현
-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활력있는 음성
-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음성
-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음성
- 전통역사 문화자원의 발굴계승을 통한 뿌리 깊은 음성

■ 발전방향

- 도시성장관리축 : 도시 및 편익시설 재정비, 도시기능의 활성화
- 농공균형육성축 : 첨단산업 유치 및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농공병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도모
- 청정기술환경축 : 공해유발업종 제한, 청정기술형 첨단산업유치, 농촌마을
- 정비, 녹지축의 조성 등 개발과 보전의 조화

(3) 괴산군(청정자연 BIO농산업 중심지역)

■ 기본목표

- 경쟁우위의 농축산업을 육성하는 괴산
- 활력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괴산
- 함께하는 사회복지지를 실현하는 괴산
- 특색있는 문화관광을 개발하는 괴산
-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괴산

■ 발전방향

- 경쟁우위의 농축산업육성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유치
- 민생경제 활성화
- 주민편의의 지역균형 개발
- 함께 잘사는 사회복지기반 조성
- 특색있는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
- 생태보전 및 산림자원 개발
-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4) 증평군(Green-Best 증평, 친환경 녹색모델 도시)

■ 기본목표

- 솔라밸리 중심 지역 및 태양광 산업 육성 - 레드벨트(Red-Belt) 솔라도시
- 쾌적한 녹색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조성 - 그린벨트(Green-Belt) 디자인 도시
- 수변 생태환경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 블루벨트(Blue-Belt) 웰빙체험도시
- 인삼자원을 활용한 청주공항 연계형 건강 관광도시
- 농·도(農都), 중·도(曾道) 상생발전, 균형발전 모델도시
-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통한 충북의 중심, 중부권 거점도시
-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문화도시, 더불어 잘사는 보건복지도시

■ 발전방향

- 태양의 땅 충북, 솔라밸리 구축과 연계한 태양광 산업의 중점 육성
- 생명의 땅 충북, 바이오밸리 구축과 연계한 인삼산업 육성과 관광 자원화
-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적 교통 인프라의 지속 구축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환경친화적 모델도시 건설
- 미래지향적 공간 구조 재편을 통한 거점별 특성화
- 증평(曾坪)과 도안(道安)이 함께 상생하는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도모
-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인재육성과 복지타운 복지 거점화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4) 청주권(청주·청원)

(1) 청주시(300만 그린광역권을 선도하는 생태중심 문화도시)

■ 기본목표

- 효율적인 도로계획과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도시
- 역사의 정체성 재현과 생태중심의 문화도시
- 첨단과학기술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미래형 경제도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청정 녹색도시
-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복지가 보장되는 삶의 질 높은도시

■ 발전방향

- 수요를 예측하는 효율적인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
- 전통문화 교육의 계승 발전으로 지역특성화 전략 구축
- 첨단산업(IT·BT)과 생태문화산업(GT·CT)집중 육성으로 역동적 경제기반 조성
- 항상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
- 노인·여성·장애인·아동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2) 청원군(친환경 첨단신산업 중심지역)

■ 기본목표

- 첨단산업 도시
- 친환경 농업 도시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 효중심 나눔 복지 도시

■ 발전방향

- IT·BT·NT가 결합된 첨단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과 환경친화형 휴식공간 제공
- 녹색 신재생 에너지 보급
- 노인이 행복한 복지행정 추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VI.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1. 충북 균형발전정책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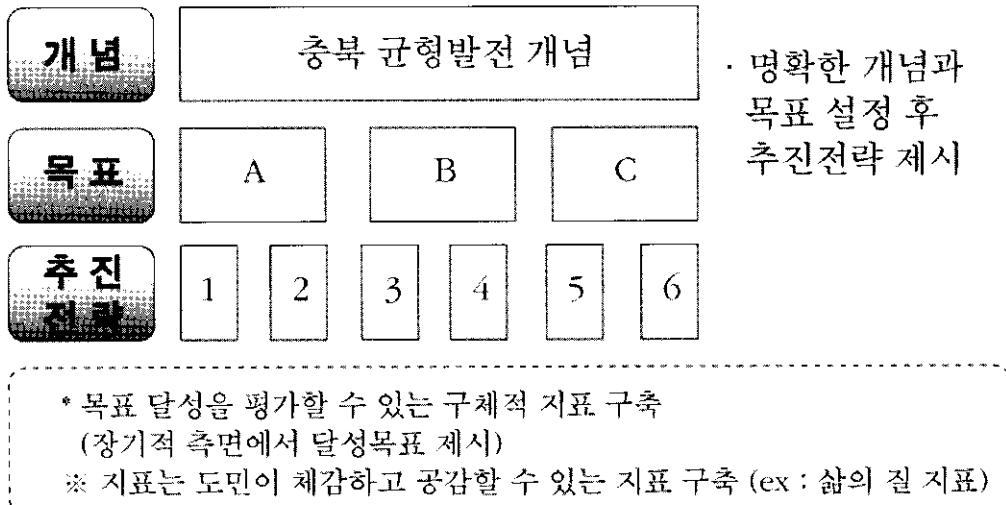
1.1 충북 균형발전의 개념

■ 문제점

- 그동안 추진되었던 도차원의 지형균형발전정책은 개념과 목표 측면에서 구체성이 다소 부족
 - 사업 중복 및 개별적 추진, 통합적 관리 부족, 성과도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개념과 목표설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 필요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북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목표 설정이 요구됨

■ 제고 방안

- 충북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 재정립
 -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앞서 먼저 충북 균형발전의 개념을 재정립
 - 개념과 목표설정을 통해 균형발전사업 범위, 내용,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설정
 -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통합적 기획 및 평가, 모니터링, 성과도출이 가능함
 - 낙후지역 → 개발가능지역 또는 발전촉진지역 등으로 의미 변경
 - 지역자원을 활용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 지역주민 주도가 가능한 사업군
 - 수도권 기업 및 외자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산업군
 - 도의 낙후지역 지원정책(도 조례)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군
 -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성이 없는 사업군
- 균형발전 개념과 목표의 명료화
 -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목표의 설정은 주어진 자원의 한계 즉, 매년 지원 가능한 예산 및 제도적 역량내에서 실천 가능성은 고려
 - 경제 성장 대비 주민복지 및 삶의 질 개선
 - 총량적 가시적 성장 대비 지역발전역량 구축 등
 - 목표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구성, 재정지원, 개발전략 등 정책적 제고방안을 마련
-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 지역발전의 척도는 지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임
 - 지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지속가능한 지표 등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재구축
 -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가능
 - 충북도의 균형발전사업 성과 홍보와 연동하여 추진



〈그림 VI-1〉 충북 균형발전 개념과 목표설정

2. 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구축

2.1 원인 해결형 지원조직 구축

■ 문제점

-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간 연계성과 지속성은 부족함
 - 관련사업 및 사업부서간 연계성 부족, 유사사업 추진, 사업성과 도출보다 실적 위주 사업이 추진됨
- 균형발전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추진 체계 미비
 - 균형발전업무의 통합적 기획 및 추진 조직이 없으며, 균형발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 각 부서별로 국토계획(기획관리실)·광역권사업(균형정책팀)·도종합계획(기획 관리실)·지역균형발전사업(균형발전팀)으로 분리되어 추진됨
 - 충남, 전북, 강원의 경우 한 부서에서 지역개발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충남은 균형개발·개발정책·분권정책·지역개발, 전북과 강원은 광역권·기 초생활권·지역균형발전업무로 체계적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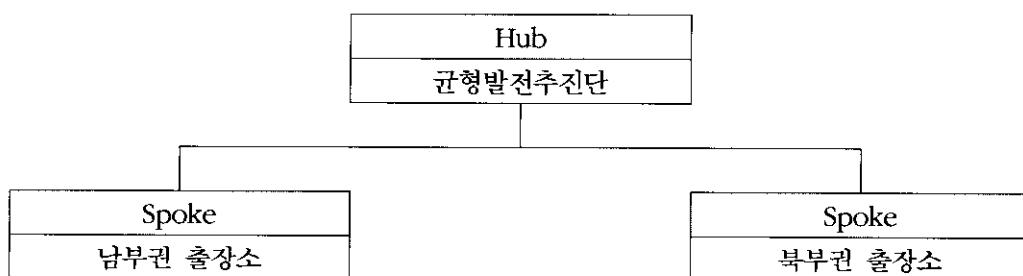
〈표 VI-1〉 타 지자체의 균형발전업무 조직구성

지자체	균형발전 담당 실국과	실과 내 담당
전라 북도	(실국)기획관리실 → (실과)정책기획관, 예산과, 성과관리과 등	균형발전담당
강원도	(실국)기획조정실 → (실과)기획관실, 지역발전담당관실, 남 북협력담당관실 등	지역발전담당
충청 남도	(실국)기획관리실 → (실과)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혁신관리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등	균형개발, 개발정책, 분권정 책, 지역개발담당
충청 북도	(실국)기획관리실 → (실과)정책기획관 (실국)균형건설국 → (실과)균형개발과	국토 및 도계획담당 균형정책팀, 균형발전팀

■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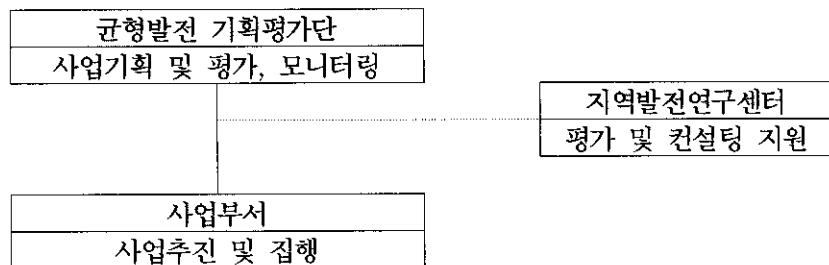
○ 균형발전추진단(안) 운영 : 사업총괄 기구

- 균형발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 사업 기획 및 추진, 집행, 평가 등 종합적 업무 수행
- 균형발전사업의 통합적·연계적 추진과 중앙부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관리
 - 정부사업이 상향식 공모사업에 의해 추진됨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충북도
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총괄기구 운영
- 추진단은 Hub(총괄기구) 역할을 남·북부권 출장소가 권역별 Spoke 역할 담당



○ 균형발전기획평가단(안) 구성 : 사업기획 및 평가 위주기구

- 실국 단위 총괄기구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대안으로 균형발전정책의 통
합적 기획, 평가, 컨설팅 위주의 팀 단위 소규모 기획평가단 구성(기획감사실
내 별도조직)
 - 균형발전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
 - 기획평가단의 사업기획 및 평가 권한 강화를 통해 실질적 업무 수행
 - 사업 추진 및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추진
-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 센터 내 권역별 연구팀 인력 활용(기획, 자문 및 평가단 구성)



균형발전추진단(안)	<p>[1]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실국 단위 총괄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획 및 추진, 집행, 평가 등 종합적 업무 수행 <p>[2] 추진단은 Hub 역할, 남·북부권 출장소가 권역별 Spoke 역할 담당</p>
	<pre> graph TD A["Hub 균형발전추진단"] --> B["Spoke 남부권 출장소"] A --> C["Spoke 북부권 출장소"] </pre>
균형발전기획평가단(안)	<p>[1] 사업기획 및 평가, 모니터링 중심의 평가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단의 기획 및 평가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관리 - 사업 추진 및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추진 <p>[2] CRI(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평가 및 컨설팅 업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내 권역별 연구팀 인력 활용(기획, 자문 및 평가단 구성)
	<pre> graph TD A["균형발전 기획평가단 사업기획 및 평가, 모니터링"] --- B["지역발전연구센터 평가 및 컨설팅 지원"] C["사업부서 사업추진 및 집행"] A --- C B --- C </pre>

2.2 권역별 거점기능 지원체계 구축

■ 문제점

- 현재 운영 중인 남·북부권 출장소는 일반 업무 및 민원 관련 업무에 국한되어 있음
 - 남·북부권 출장소의 권역 발전방향과 맞는 업무확장과 함께 권한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제반 업무 수행이 필요함
 - 북부출장소(2011. 1월 개소) : 3과(행정지원, 산업자원, 환경) 12명
 - 남부출장소(2012. 1월 개소) : 3과(행정지원, 농업경제, 건설관리) 12명
- 청주·청원 통합 이후 남·북부권 출장소의 기능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강화함

■ 제고 방안

○ 남·북부권 출장소 기능 강화

- 출장소의 명칭을 가칭)북부권(남부권) 균형발전사업단으로 변경
- 도의 균형발전 추진의지 및 실천력 제고를 위해 필요
- 출장소장의 직위를 해당권역의 특성에 맞게 도의 국장이 겸직함으로서 도의 균형발전의지 표명
- 성질별 조직을 사업별 조직(예:북부권-중원문화권 업무, 남부권-신발전지역 업무 등)으로 전환
 - 북부권 : 기업도시, 산업단지조성, 중원문화권 업무 등
 - 남부권 : 바이오·식품 농산업 진흥, 실버산업, 신발전지역 업무 등
- 기능 : 정부지역발전사업, 도 균형발전사업, 지역 간 연계사업 등의 추진역할 강화
- 출장소 직원의 일정 인력을 권역 시군 공무원으로 채용
 -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역 공무원 채용

○ 권역별 사업단(연구소, 사업소 등) 기능 확대

- 사업단의 기능과 함께 규모, 역할, 정책결정권을 점진적으로 확대
 - 북부권(관광, 산업, 한방관련 기관) : 내수면연구소, 중원문화재연구소, 제천 한방연구소, 신소재 연구소 등
 - 남부권(농업 및 산림 관련 기관) : 포도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보은생물자원 산업진흥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내수면연구소 등

3. 균형발전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 문제점

-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조례제정, 전략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련 예산을 해당 시·군에 내려주고 도는 과정평가만 하는 소극적 추진방식을 취하여 왔음
- 사업선정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명확한 매뉴얼이 미비하여 성과도출 한계
- 향후 청주·청원 통합 후 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기에 남·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도의 적극적 역할 중요
 - 비청주권 균형발전에 대한 도 차원의 높은 신뢰와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도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필요

■ 제고 방안

- 균형발전 예산을 해당 시·군에 내려주고 도는 과정평가만 하는 소극적 추진방식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적극적 추진방식으로 전환

- 사업선정 : 충북도 현실에 맞는 균형발전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시·군 현안사업 위주의 백화점식 사업선정 방지(예: 전남도의 행복마을사업)
- 예산권 :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 추진의지를 판단하여 매년 예산 지급을 결정하고, 예산지출항목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평가 : 매년 진도 및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산 패널티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사업선정	충북도 현실에 맞는 균형발전사업 모델 발굴
예산권	매년 예산 지급 결정 및 예산지출항목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산 패널티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 충북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강력한 집행과 평가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 의지를 도민들에게 표명
- 균형발전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균형발전사업 기획, 평가, 모니터링 강화
 - 관련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사업성과 도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관리

4. 균형발전정책 제도개선

4.1 지역균형발전 조례 수정·보완

■ 주요 조례 개정 내용

- 균형발전의 개념과 사업 정의
- 낙후지역 제정지원 강화
- 연구센터 및 관련 조직의 기능 강화
- 낙후지역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표 구축
- 균형발전 사업유형 등

1) 사례검토 : 조례 비교(충북, 충남, 전북)

(1) 검토 대상

-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이 있는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현재 부산, 광주, 인천, 대표 충북, 충남, 전북의 7개 광역지자체이며, 이 중에서 충북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전북의 조례를 비교 검토함

〈표 VI-2〉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	최근 개정	시행규칙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6-05-10 조례 제4087호	2010-12-29 조례 제 4578호	
인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5-07-25 조례 제03831호	2008-03-31 조례 제4163호	
광주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2007-02-01 조례 제3469호		2011-02-15 규칙 제2816호
대전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2007-05-11 조례 제3498호	2010-11-05 조례 제3902호	
충북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2007-04-13 조례 제2998호	2011-04-01 조례 제3354호	2010-08-11 규칙 제2678호
충남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2007-03-30 조례 제3252호	2011-01-01 조례 제3567호	2007-12-31 규칙 제3022호
전북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6-05-12 조례 제3193호	2010-11-05 조례 제3537호	2010-11-12 규칙 제2824호

(2) 조례의 구성

- 조례의 기본적인 골격은 총칙, 균형발전계획, 특별회계의 설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공통
- 총칙은 목적, 정의가 공통 사항이며, 충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추가됨. 충북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한 조항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예산확보 지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음
-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해서 충북과 충남은 지원 대상지역을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토록 하였으나, 전북은 이러한 규정 없이 동부권으로 명시
 - 전북 동부권 :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

- 3개 도가 공통적으로 계획의 수립 평가에 대한 조항을 둠. 또한 충북·충남은 사업의 선정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전북은 별도의 조항을 두고 도지사로 하여금 정함
 - 전북 :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 관광 등 개발계획
-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입은 3개 도가 공통적으로 도보통세,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정 분으로 함
 - 충북 : 도 보통세 5%이내 전입금,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5%
 - 충남 : 도 보통세 5%이내 전입금,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10%
 - 전북 : 도 보통세 4%이내 전입금,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10%
- 3개 도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은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에 대해 규정
 - 충북 :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표 VI-3〉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관련 조례의 구성

구 분	충 북	충 남	전 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지역균형발전 계획 및 사업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제7조(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 체 운영) 제8조(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지도·점검) 제9조(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평가)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의 선정)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등)
제4장 균형발전 위원회 등	제14조(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제18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	제9조(설치와 기능) 제10조(구성과 운영) 제11조(회의) 제12조(수당 등)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제9조(구성) 제10조(실비변상 등)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 충남은 시행규칙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충북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전북은 조례에서 규정함. 충남의 경우 조례 제3조 2항에서 정한 지원대상 지역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연평균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 도로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표준화점수로 산출한다는 방법 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 발전수준 분석의 예외조항으로 성장거점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는 지역을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VI-4〉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조례 시행규칙의 조문 구성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장 지역균형 발전 계획 및 사업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 제5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제2조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2조(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제3조(세출예산 지원 비율)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준용규정)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장 균형발전 위원회 등	제4조(준용)		제4조(위원 임명 및 위촉)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운영세칙)

(3) 주요 내용 검토

■ 균형발전의 정의

- 1조의 목적에서는 해당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3개 광역자체가 모두를 규정함. 전북의 경우 “균형발전”이라는 개

- 념과 정책 추진 상 인식의 차이, 사업선정 및 추진의 수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조례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균형발전의 용어 자체가 갖는 지역 간 사회·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 상의 일정수준의 균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됨. 또한 전북의 특화발전은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추진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 하지만, 전북의 조례에서는 “특화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음
- 충남의 “균형발전사업”이라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 “지역균형발전의” 정의를 제시한 곳은 충청북도이며, 충북의 조례(제2조 1항)에서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함

■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및 지표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3개 광역지자체가 다르게 적용
 - 충북 : “낙후지역”이라 칭하며, 조례 제6조(불균형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시·군을 말함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낙후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0. 4. 1>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 충남 :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이라 칭하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구체적 선정기준 제시
- 전북 : “동부권”이라 칭하며, 불균형지역 선정에 대한 내용 없음
-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은 5년간의 지표의 변화 실태를 조사하여 재지정 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표체계가 갖는 특성상 지원대상지역의 변동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음. 또한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지역 (시·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근거 없음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

- 계획의 종류와 계획기간에 있어서, 충남만은 3단계의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반면에, 충북과 전북은 2단계의 계획을 수립
 - 충북 :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
 - 충남 : 기본계획(20년), 개발계획(5년), 시행계획(1년)
 - 전북 : 발전계획(5년)
- 3개 도 모두 계획의 목표, 기본방향을 규정함. 이 외에 충북은 지역별·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충남의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전북은 식품·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
 - 충북 : 목표, 기본방향, 지역별·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사항
 - 충남 : 목표, 기본방향, 지리적 특성·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전북 : 목표, 지리적 특성, 산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
- 충청북도는 기본계획(20년)의 수립 내용을 첨가하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사업 계획적 성격을 갖는 개발계획(5년)에 대해 도지사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계획수립은 시·군별로 추진하여 권한이 위임되어야 자율권을 보장받고, 시·군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음
- 사업추진에 따른 별도의 평가 및 모니터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시행계획에 의거한 점검·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충북만이 시행함
 - 충북 조례 제18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에서 평가 및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 충북과 전북은 명시하고 있는 반면, 충남은 관련 내용 없음
- 또한, 사업비의 차등지원에 대해서 충남과 전북은 특별회계의 세출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지원규모, 보조비율에 차등지원을 들 수 있도록 함

충북 조례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들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낙후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 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의 기능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이 주를 이루며, 자문기능을 명시한 곳은 충북뿐임. 위원회의 구성은 충북은 11인 이내이고, 충남과 전북은 25인 이내임, 충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충남과 전북의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소 상이함

- 충북의 당연직 위원은 균형건설국장임, 충남의 당연직 의원은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국장, 복지보건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이며, 전북은 도 관계 실·국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임
- 충북의 위촉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충청북도정책자문단 위원 2명, 지역발전연구센터 2명,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이며, 충남의 위촉위원은 지원 대상 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북은 동부권 6개 시·군 도의원,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함

〈표 VI-5〉 충북도의 조례 및 시행규칙 수정·보완(안)

구 분	조문	현재	개정(안)	비고
목적	조례 1조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자립적 지역성장 및 발전 추가	
정책 내용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소득,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특화개발을 통한 성장)	
대상 지역	조례6조	시·군별 지역발전도 조사·분석 (세부지표내용 미비)	인구, 재정력, 소득할 주민세 등 세부지표 규정	
계획 수립	제4조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	기본계획(20년), 개발계획(5년), 시행계획(1년)	계획수립 지침 마련 시군계획수립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사업 범위 및 방식	시행규칙 2조	구체적 내용 없이 균형발전사업 포괄적 규정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구체적 사업범위 및 방식 규정 필요 (협력 광역지역 개발 추가)	
추진 사업 유형		사업유형 규정 미비 (지역특성, 지역자원 고려부족)	사업유형 다양화(지역특성, 지역자원 고려)	지침 마련
사업 추진 지역		시·군	광역지역(시·군간) 시·군 포함 또는 읍면별 지역	지침 마련
추진 체계	조례14, 18조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기능	통합적 추진체계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전담팀) -기능 및 역할 강화	
재원 지원	조례10, 11, 12조	도보통세 5% 지역개발계정사업계정 도 배정분 5% 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추가	성과연동 포괄적 지원집중 추가 예산지원 강화(지역개발계정사업계정 도 배정분 10% 등)	유도 조항 시행규칙 추가

4.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 문제점

-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지원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특별회계 계정)를 지역 발전도에 따라 도비지원 규모를 차등화 하여 지원함
 - 도비가 연간 178억원, 5년간 총 890억원 수준으로 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균형 의지 제고가 필요함
 - 7개 시·군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제천
 - 그러나, 연평균 사업비가 178억원(시·군당 25억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에는 다소 미흡함

■ 제고 방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점진적 확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도 보통세 징수액' 등을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평균 사업비가 178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상향조정과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도 보통세 징수액의 점진적 상향 조정(5% → 상향 조정)
-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5% → 10%(상향 조정)
 - ※ 참고) 충남 :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10%
 - 전북 : 균특회계 지역개발배정분 도 배정분의 10%

4.3 도비보조금 제도의 개선

■ 도비보조금 분야별 기준 보조율의 조정

- 농림수산 분야의 도비 보조가 많으나, 비중은 30% 이하가 대부분으로 이를 상향조정
- 도비 보조금의 배분방식에 있어서 도 기준 보조율의 차등 보조율 적용 규정 강화 필요
 - 현행 차등 보조율은 10%, 5%를 각각 가산·차감하여 산출된 비율에 의거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고 가감의 폭을 상향조정

■ 도비보조금 분야 확대

- 지역개발과 같은 분야의 경우 경기도는 17개 분야로 22.7%이지만, 충북은 11개 분야로 8.3%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개발 분야의 발굴 필요
 - 경기도 (예)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분야 신설

4.4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도자율편성사업 연계 추진

■ 문제점

- 현재 정부의 광역특별회계에는 광역발전계정과 지역개발계정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음
- 지역개발계정은 다시 시도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자율 편성사업으로 나누어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시·도자율편성사업은 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고 방안

- 기획재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도록 규정함
- 성장축진지역 사업 우선 고려 가능¹⁷⁾
 - 시·지사는 재원 배분 시 관할구역 내 성장축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가능
 - 각 지자체가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성장축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 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충북 성장축진지역 :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옥천

- 시·도자율편성사업 선정시 선정항목(18개)과 연관성이 높은 성장축진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또는, 시·도자율편성사업 선정시 연관성이 있는 균형발전사업 발굴·선정
- 정부지역발전정책과 연계성 강화 및 부족한 사업비 확보 가능

17) 기획재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2012, P. 67

〈표 VI-6〉 광역특별회계 편성체계

편성방식	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시·도	지역개발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시·도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	④ 시·도자율편성사업 * 기초생활권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국가직접편성	-		③ 국가직접 편성사업	⑥ 국가직접 편성사업

①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지역개발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신청한도(계속
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③ 광역발전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

-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산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고려가 우선
인 사업으로, 각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자체 요구 등
을 받아 직접 예산 편성

《참고 : 시·도자율편성사업 선정사업 항목(18개)》

- | | |
|----------------|-----------------------|
|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 ■ 관광자원 개발 |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 ■ 체육진흥시설 지원 |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지원 |
| ■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 ■ 청소년시설 확충 |
|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 ■ 농어업기반정비 |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 대중교통 지원 |
| ■ 산림경영자원 육성 | ■ 지역거점 조성지원 |

4.5 낙후지역 졸업제도 도입 및 성장촉진지역(사업) 지정

- 2단계 5개년 사업이 종료 후 균형발전도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지수가 양(+)의 발전도를 보이는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졸업하는 제도임
 - 낙후지역에서 졸업하는 지역은 성장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성장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함
- 효과
 - 그동안 추진된 균형발전지역 지정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도 균형발전의 지 실현 및 성과 거양
 - 졸업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롭게 발전지역으로 도약하는 성장촉진지역 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킴

4.6 전문관제도 도입

- 균형발전 업무의 지속적 추진 및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 균형발전 업무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지정
 - 균형발전사업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운영
 - 전문관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담당 사무관은 전문관(3년)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례 참고

4.7 남·북부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

- 남·북부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
 - 남·북부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로드맵 입안
 - 대내외 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방안 마련
 - 개별지역단위 및 권역 내 협력사업 위주 발굴
 - 권역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주민밀착형 계획 수립
- 균형발전 예산의 지역별 지원
 - 정부 및 지방정부 균형발전에 대한 총괄적 현황 파악
 - 균형발전 예산의 지역 간 배분 및 지원현황 분석
 - 균형발전 예산의 중·장기적 지원계획 수립
 -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

4.8 도정 정책분석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수립

- 도의 실·국별 사업예산 분석을 통한 도의 균형예산 체계 분석 및 방향 제시
 - 실·국별 예산 구조 분석을 통한 도의 균형정책의지 분석 및 방향제시
 - 연도별 예산 수립 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화예산 체계 구축

4.9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 특정지역의 과밀 억제를 통한 권역별 상생발전 도모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 특정지역 입지 사유, 지역발전사업 집중 영향평가 및 검토
-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 관련 사업의 특정지역 집중유발과 상생발전 효과 측면에서 영향 검토
- 균형발전 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의무적 행위 부과
- 균형발전 기여도가 우수한 사업은 우선적 예산 반영
-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 변경 제안
- 현행 주요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업별 차등보조를 지역 낙후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보조 확대 수단으로 활용

예) 기획예산처에서 2005년에 도입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사례 참고

4.10 균형발전사업 매뉴얼 작성

○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선정과 추진, 관리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매뉴얼 작성

- 사업선정, 사업추진, 컨설팅, 사업평가, 거버넌스체계 구축, 홍보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 도출 가능

5.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 문제점

○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은 시·군 단위 현안사업 위주로 낙후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주기 어려움

-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보다 낙후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됨

- 또한, 시·군별 사업이 상이하고, 성과도출을 위한 매뉴얼 미비로 성과도출이 미흡함

○ 시·군 차원에서도 발전된 읍·면과 저 발전된 읍·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군별 사업추진과 예산배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보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군 측면보다 소단위 지역에 대한 낙후지역 해소방안이 필요함

■ 읍면별 발전도 분석

- 시·군별 발전도는 충북지역에서 시·군간 격차를 분석하는데 용이하지만 한 지역에서도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정도 파악은 미흡함
-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정책지원도 요구되고 필요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정차원에서 읍 중심의 발전보다는 면지역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읍·면별 발전도 분석은 6개 지표로 시 단위 동 지역을 제외한 103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별 발전도 분석(양(+))의 지역 : 42, 음(-)의 지역 : 61)
 - 6개 지표 : 인구변화율, 노령화 지수, 도로 포장율, 총사업체 종사자수비율, 의사수,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

■ 읍면별 발전도 순위

- 높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청원군의 오창읍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천군의 진천읍, 음성군의 대소면, 금왕읍, 진천군의 이월면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청원군이나 음성·진천군 발전지역에 속한 읍면이 높은 순위를 보임
- 반대로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옥천군의 청성면이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은군의 회남면, 영동군이 상촌면, 용화면, 단양군의 적성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부3군과 단양군 지역의 읍면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표 VI-7〉 읍면별 발전도 순위
〈높은 발전도 순위〉 〈낮은 발전도 순위〉

순위	군	읍면	발전도	순위	군	읍면	발전도
1	청원군	오창읍	3.52	94	단양군	여상천면	-1.16
2	진천군	진천읍	2.23	95	옥천군	안남면	-1.17
3	음성군	대소면	2.19	96	보은군	회인면	-1.17
4	음성군	금왕읍	2.13	97	보은군	탄부면	-1.27
5	진천군	이월면	1.73	98	영동군	학산면	-1.27
6	청원군	옥산면	1.69	99	단양군	적성면	-1.28
7	옥천군	옥천읍	1.62	100	영동군	용화면	-1.30
8	음성군	삼성면	1.58	101	영동군	상촌면	-1.36
9	청원군	내수읍	1.50	102	보은군	회남면	-1.45
10	진천군	광혜원면	1.49	103	옥천군	청성면	-1.74

● 충주시

- 충주시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양성면이 1.00으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덕읍, 금가면, 동량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소태면으로 -0.66이며, 그 다음으로 살미면, 엄정면, 신니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어 음(-)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보다 양(+)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8〉 충주시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충주시	1	양성면	1.00
	2	주덕읍	0.71
	3	금가면	0.46
	4	동량면	0.36
	5	이류면	0.25
	6	수안보면	0.20
	7	가금면	0.02
	8	산척면	-0.01
	9	노은면	-0.20
	10	신니면	-0.23
	11	엄정면	-0.36
	12	살미면	-0.44
	13	소태면	-0.66

● 제천시

- 충주시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봉양읍이 0.14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성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수산면으로 -1.08이며, 그 다음으로 청풍면, 덕산면, 백운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어 시급도시인 충주시에 비해 제천시는 음(-)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이 양(+)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또한 양(+)의 발전도를 보이는 봉양읍과 금성면도 높은 양(+)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음(-)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낮은 발전도는 충주호 및 월악산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표 VI-9〉 제천시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제천시	1	봉양읍	0.14
	2	금성면	0.09
	3	송학면	-0.20
	4	한수면	-0.24
	5	백운면	-0.52
	6	덕산면	-0.68
	7	청풍면	-0.80
	8	수산면	-1.08

● 청원군

- 청원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오창읍이 3.52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옥산면, 내수읍, 부용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낭성면으로 -0.45이며, 그 다음으로 미원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청원군은 대부분의 읍면이 양(+)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낭성면과 미원면 뿐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는 오창읍은 2순위인 옥산면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이루어지는 각종 대규모 사업(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VI-10〉 청원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청원군	1	오창읍	3.52
	2	옥산면	1.69
	3	내수읍	1.50
	4	부용면	1.35
	5	남이면	1.30
	6	강외면	1.20
	7	강내면	1.17
	8	현도면	0.95
	9	남일면	0.76
	10	북이면	0.39
	11	가덕면	0.21
	12	문의면	0.05
	13	미원면	-0.27
	14	낭성면	-0.45

● 진천군

- 진천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진천읍이 2.23으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월면, 광혜원면, 덕산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백곡면으로 -0.20이며, 유일하게 음(-)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진천군은 대부분의 읍면이 양(+)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의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백곡면 뿐인 것으로 나타나 각종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읍면에서 높은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1〉 진천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진천군	1	진천읍	2.23
	2	이월면	1.73
	3	광혜원면	1.49
	4	덕산면	1.46
	5	문백면	0.69
	6	초평면	0.21
	7	백곡면	-0.20

● 음성군

- 음성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대소면이 2.19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왕읍, 삼성면, 생극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임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맹동면으로 -1.04이며, 그 다음으로 원남면, 소이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음성군도 진천군과 마찬가지로 각종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읍면에서 높은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2〉 음성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음성군	1	대소면	2.19
	2	금왕읍	2.13
	3	삼성면	1.58
	4	생극면	1.26
	5	음성읍	1.12
	6	감곡면	0.93
	7	소이면	-0.16
	8	원남면	-0.58
	9	맹동면	-1.04

◎ 단양군

- 단양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단양읍이 0.79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매포읍, 영춘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적성면으로 -1.28이며, 그 다음으로 어상천면, 단성면, 가곡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단양군은 백두대간 규제지역이 속한 지역으로 단양읍과 매포읍의 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면 단위지역은 모두 음(-)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어 읍과 면단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3〉 단양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단양군	1	단양읍	0.79
	2	매포읍	0.22
	3	영춘면	-0.25
	4	대강면	-0.55
	5	가곡면	-0.77
	6	단성면	-0.84
	7	어상천면	-1.16
	8	적성면	-1.28

◎ 증평군

- 증평군은 1개 읍과 1개 면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증평읍은 1.11의 양(+)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안면은 -0.03으로 음(-)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태양광특구 지정 등 신성장지역으로써 증평군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있음. 도안면의 경우에도 수치상으로는 음(-)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치가 낮고 점차 발전도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4〉 증평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증평군	1	증평읍	1.11
	2	도안면	-0.03

◎ 괴산군

- 괴산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괴산읍이 1.18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리면, 연풍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문광면으로 -1.15이며, 그 다음으로 감물면, 장연면, 소수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괴산군은 대표적인 저발전지역으로 많은 면지역이 속리산 국립공원의 규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괴산읍 중심의 개발로 인해 괴산읍과 면지역간의 발전도 격차가 높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5〉 괴산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괴산군	1	괴산읍	1.18
	2	사리면	0.12
	3	연풍면	-0.56
	4	칠성면	-0.59
	5	불정면	-0.68
	6	청안면	-0.73
	7	청천면	-0.77
	8	소수면	-0.81
	9	장연면	-0.91
	10	감물면	-1.10
	11	문광면	-1.15

● 보은군

- 보은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보은읍이 1.07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북면, 수한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회남면으로 -1.45이며, 그 다음으로 탄부면, 회인면, 마로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괴산군과 함께 남부3군은 대표적인 저발전지역으로 보은군은 대청호 수변규제의 영향이 높아 보은읍을 제외한 면지역은 음(-)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고 그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읍과 면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6〉 보은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보은군	1	보은읍	1.07
	2	내북면	-0.02
	3	수한면	-0.18
	4	속리산면	-0.48
	5	장안면	-0.56
	6	삼승면	-0.64
	7	산외면	-0.65
	8	마로면	-0.73
	9	회인면	-1.17
	10	탄부면	-1.27
	11	회남면	-1.45

● 옥천군

- 옥천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옥천읍이 1.62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동이면, 이원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청성면으로 -1.74이며, 그 다음으로 안남면, 안내면, 청산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괴산군,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옥천군도 대청호 수변규제 및 속리산 국립공원 규제의 영향이 높아 옥천읍을 제외한 면지역은 음(-)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고 그 수치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괴산군,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읍과 면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7〉 옥천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옥천군	1	옥천읍	1.62
	2	동이면	-0.27
	3	이원면	-0.37
	4	군북면	-0.67
	5	군서면	-0.70
	6	청산면	-0.73
	7	안내면	-0.96
	8	안남면	-1.17
	9	청성면	-1.74

● 영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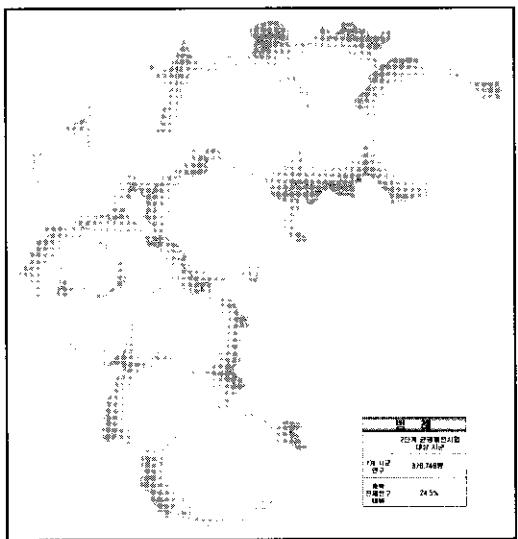
- 영동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를 보면 영동읍이 1.07로 가장 높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용산면, 양강면의 순으로 발전도 순위를 보이고 있음
- 가장 낮은 발전도를 보이는 읍면은 상촌면으로 -1.36이며, 그 다음으로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등이 낮은 발전도를 보이고 있음
- 영동군은 영동읍과 용산면을 제외한 면지역은 음(-)의 발전도를 보이고 있고 그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과 마찬가지로 읍과 면지역간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VI-18〉 영동군 읍면별 발전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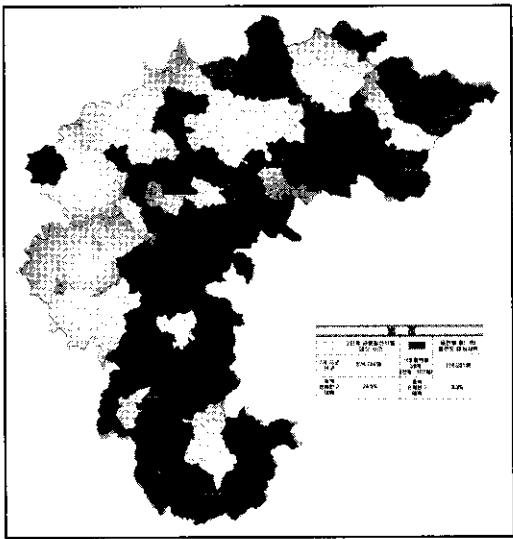
시군	순위	읍면	발전도
영동군	1	영동읍	1.07
	2	용산면	0.01
	3	양강면	-0.06
	4	황간면	-0.36
	5	추풍령면	-0.62
	6	매곡면	-0.72
	7	심천면	-0.86
	8	양산면	-0.94
	9	학산면	-1.27
	10	용화면	-1.30
	11	상촌면	-1.36

■ 제고 방안

- 충북 자체적인 낙후지역 개발유형 제시
 - 충북도의 읍·면 단위 낙후지역 개발유형 개발
 - 사업유형과 예산지출항목 등 사업추진 매뉴얼 작성, 컨설팅 및 평가 강화
 - 사업혜택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개발 유형 제시
- 사업유형 선정방향
 - 읍·면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유형 선정
 - 읍·면별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질 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 유형을 선정함
 -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주변지역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낙후 농촌지역을 그대로 두고 지역역량, 산업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현재의 시·군 단위 지원방식에서 읍·면 단위 지원방식으로 확대
 - 읍·면별 낙후지역을 해소해가는 모자이크 사업 추진
 - 균형발전 수혜인구비율이 24.5%에서 32.8%로 확대됨으로 균형발전의지에 대한 도민 만족도 제고
 - 2010년 현재 읍(-)의 발전도 읍·면 : 61개 읍·면



〈시·군단위 균형발전 사업 추진〉



〈읍·면단위 균형발전사업 추진〉

7개 시·군

⇒

61개 읍·면

○ 참고 :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

전남 행복마을

- 행복마을 개요
 - 비전 :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을 통한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목표 : 1읍면당 1개소 이상 행복마을 조성
- 추진방향
 - 한옥만으로 주택 개량, 상하수도 및 화관, 도시민 유치로 민박과 체험, 특화작물 판매
- 지원내용
 - 한옥신축자금 지원 : 보조금(4천만원 내외), 융자금(3천만원)
 - 공공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마을) : 3억(도비 1.5, 시군비 1.5)
 - 마을의 형편에 맞는 국·도비 사업 우선 선정 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 지원현황 : 현재 18개 시군 106개 마을(기존정비형 94개, 신규조성형 12개)
- 사업성과 :
 - 인구 : 1,431명 전입(2012. 2월 기준)
 - 소득 : 한옥민박 373가구 636백만원, 특산품 판매 35마을 729백만원, 체험프로그램 19개 마을 108백만원(2011년 한 해)
 - 기업유치와 일자리 : 한옥산업 활성화(한옥시공업체 지정제), 한국목조 건축 직업 전문학교 유치(한옥 1,512동을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나타내면 현재까지 529천명 일자리 효과)
 -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6.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 강화전략

6.1 권역별 시·군간 균형발전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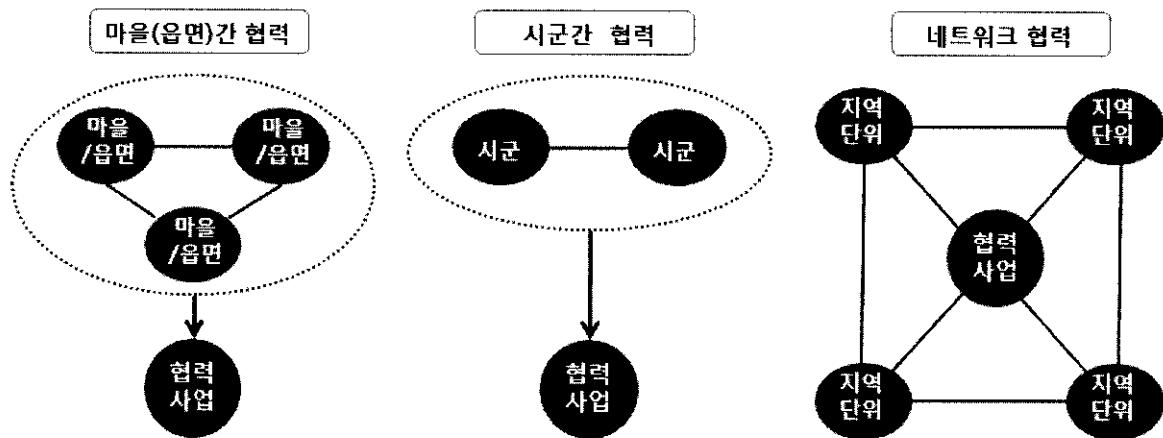
- 권역별 시·군간 상호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미흡
 - 현 시대는 행정구역은 무의미할 뿐 권역별 공동운명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 권역별 균형발전 협약 추진으로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협력 실천
 - 시·군간 협의 및 조정은 충청북도(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시·군별 조례 제정 및 충북도지역발전 지원조례 반영을 통한 구속력을 담보함
 - 주민 삶의 질에 맞춘 발전논리 개발 및 차별성 있는 공동 특화발전전략 수립, 중앙재원 확보
- 협력 기반 및 추진방식의 강화
 - 협력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식 및 행동 전환
 - 정책협력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정책협력 정보공유 활성화, 전담 부서의 강화 및 협력사업 DB구축
 - 정책협력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2 시·군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기본적으로 시·군 연계사업의 추진은 앞서 제시한 균형발전 협약, 균형발전 포럼 및 주민 워크샵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함이 사업타당성, 현실적 구체성 및 특화, 그리고 실천성 및 성과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협력 요인 소통 및 이해공유

- 협력 사업의 특성과 성공을 위한 협력유인 요인은 사업유형별로 상이 하므로 이에 대한 시·군간 충분한 상호소통과 인식공유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충주호 수변경관도로 사업, 통합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축제 개최 등 이른바 선호 공공시설형의 경우, 성공을 위한 핵심 유도 요인으로서 i) 과당 경쟁 요인의 사전 제거, ii) 시도 또는 충청북도의 사전조정, 중재, iii)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을 통한 수평적 파트너 쉽 강화, iv) 충주호 및 수변의 공동체적 공유가치 발굴, v) 예산배정 시 충북도(또는 균형발전 포럼)에 의한 제도적 협력의 권유 및 강제 등이 중요한 유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시·군간 협력 사업은 마을(읍·면)간 협력, 시·군간 협력 및 네트워크 협력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그림 VI-2〉 시·군간 협력의 세 가지 유형

■ 상향식 연계협력사업 적극 발굴로 중앙정부 예산확보 증대

- 기초생활권계획의 포괄보조금제도와 같이 중앙부처의 예산집행이 시·군의 자율적 사업 발굴 노력에 중점을 두는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전환됨
- 따라서 시·군의 적극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충북도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많은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함
-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소관부처별 예산집행이 총액범위에서 전용이월이 폭넓게 허용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조응하는 충북도의 효율적·효과적 균형발전예산 운용 시스템을 구축함이 바람직함

■ 연계협력사업의 실효성 확보

- 균형발전 예산편성절차를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반영 → 타당성 조사 → 투융자심사이행 → 예산편성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시공 순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조정 및 투융자 심사 내실화를 위해 투자우선순위 결정 시 엄정한 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업집행력을 강화함

6.3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포럼과 현장중심 주민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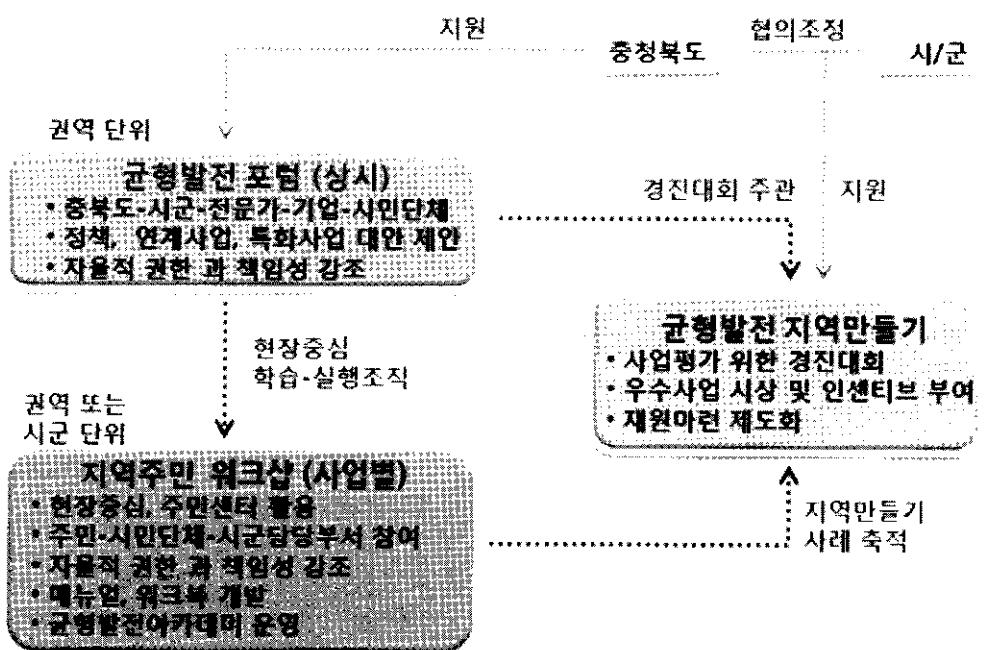
■ 권역별 발전포럼

- 균형발전 사업의 상향식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권역별로 구성하되, 충북도, 시·군, 지역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조직으로 운영함
- 형식적, 관례적 자문이나 회의가 아닌,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 특화사업 등 구

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연중 상시운영하고, 발전포럼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히 함

■ 현장중심 주민워크샵

- 권역별(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포럼의 현장 중심형 연계학습조직으로서 사업별로 지역주민 워크샵을 구성하고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업지역 주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시·군담당 부서가 참여함
- 전문가-주민의 협력으로 워크샵 매뉴얼 및 워크북(workbook)을 on/off line으로 마련하고 배포하여 주민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균형발전 지역만들기'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킴
- 지역만들기 차원에서 정기적 사업평가를 위한 시·군별(마을별) 경진대회를 지역균형발전포럼 주관으로 개최하고 우수성과 사업에 대해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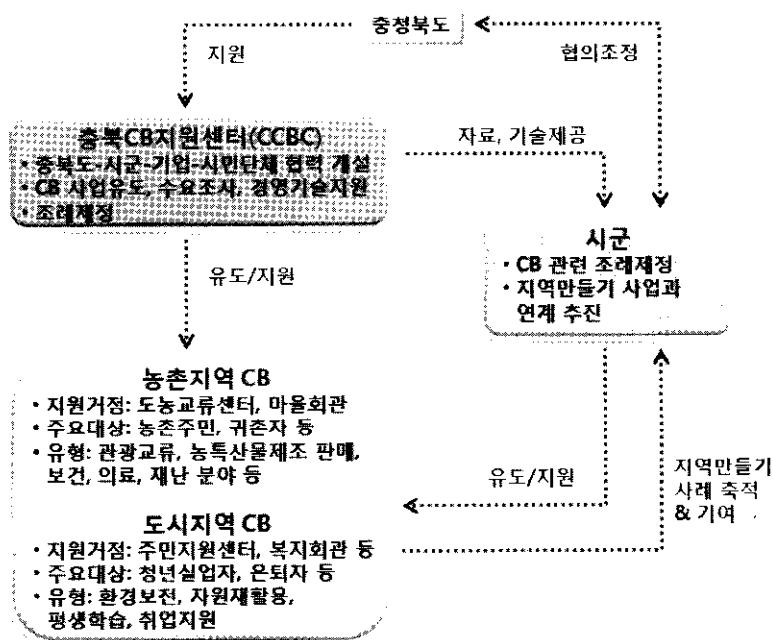


〈그림 VI-3〉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포럼과 현장중심 주민워크샵

6.4 충북커뮤니티 지원센터 운영

- 농산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인은 지역(특히 농촌커뮤니티)의 인적, 물적 기반의 원천적 미약함에 있음
-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지역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최소한의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형 사업체(community business, CB)를

- 공급하여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연결해 지역활성화를 추진함
- 이러한 커뮤니티 비지니스 모델은 충북의 낙후지역 활성화에도 유용한 전략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충북도는 시·군·시민단체·지역상공인 등과 협력하여 충북커뮤니티 비지니스 지원센터(CCBC)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시·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시·군별 CB 관련 수요를 조사하고 경영기술 등을 제공함
 - 각 시·군은 제도적 장치로서 CB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농교류센터, 주민지원센터, 마을회관 등을 활동거점으로 하여 농촌주민, 귀촌자 등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유도, 지원하고, CB 사례 및 성과를 균형발전 지역만들기 사업과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함
 - 충북의 농촌 낙후지역에 검토 가능한 CB의 유형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성 중심의 마을만들기, 관광교류, 농특산물제조 판매, 생활지원형 공익성 중심의 복지(보건/의료/재난), 육아지원 분야임
 - 한편 시·군 도시지역에 적합한 CB 유형으로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자원재활용이며, 개인자립을 위한 평생학습, 취업지원 분야를 검토함



〈그림 VI-4〉 CCBC 개설운영과 지역 CB 활성화

- 예를 들어 고령자 생활지원을 위한 CB로서 순천시 실버사업단(한국), 지역자원 활용형 CB인 (주) 이로도리(일본) 및 고령장애인 간병서비스로서 Sunderland Home Care Associates(SHCA: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 참고 :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며, 2015년까지 1천개의 우수사업을 지원할 예정
-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및 ‘(가칭)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

1) 지역순환형 CB모델 개발 및 운영

(1) 추진방안

■ 지역순환 산업 진흥형 CB

- 지역에 밀착해서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개척하되 지역 내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농어촌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고객을 확보해야 하므로 보다 많은 경영자원과 마케팅을 위한 지원과 교육을 필요로 하므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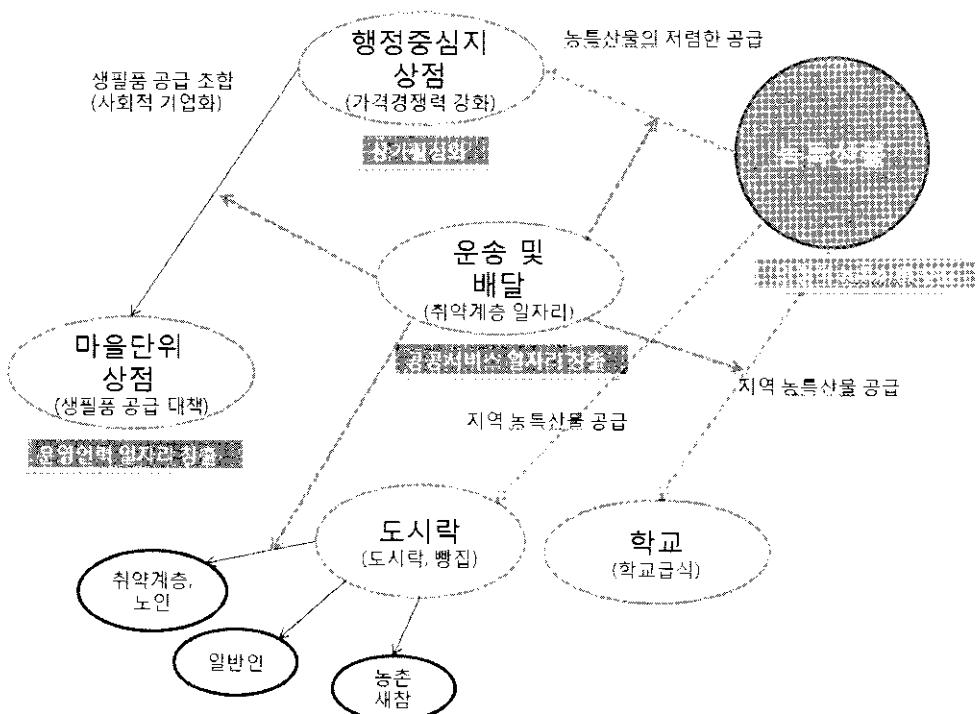
■ 지역순환 자원 활용형 CB

- 지역의 농특산품, 역사문화자원, 자연조건 등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로 지역의 향토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의 매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에 부족한 사업전문가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과 전문가 재능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창업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주민조직에 대한 중간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창업 및 경영에 대한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함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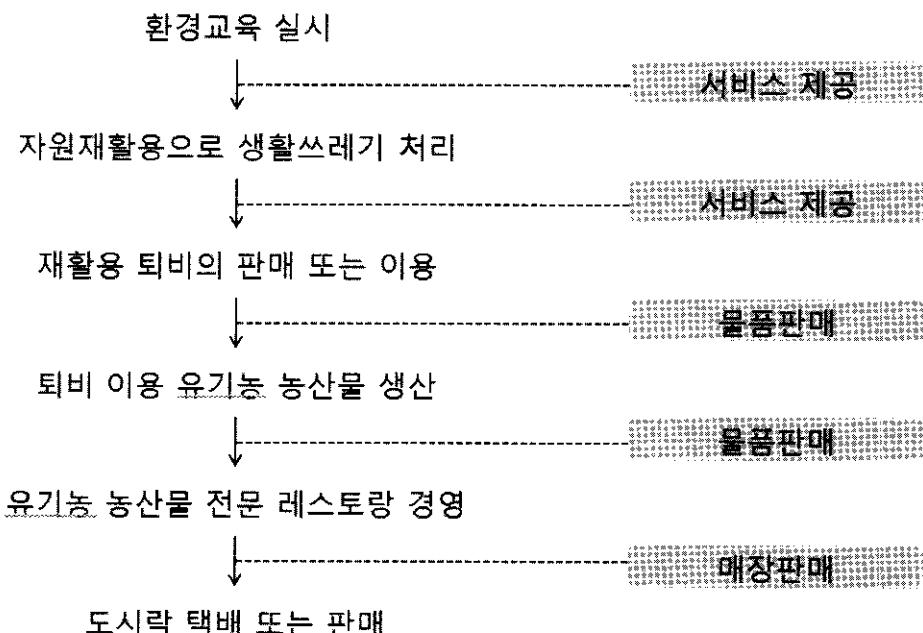
■ 지역순환 산업진흥형 CB

- 지역순환 산업진흥형 CB는 농특산분야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상점가, 음식점, 학교급식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와 배달 등의 서비스 부문 까지 확대가 되도록 함
- 지역순환 산업진흥형 CB는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적합하며 농어촌의 향토자원이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지역 내에서 자원과 일자리가 순환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지역순환 자원활용형 CB

-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고 농특산물의 경우는 생산부터 공급까지의 단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창조될 수 있고 마을 단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향토자원의 활용 행위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므로 자본이 지역 내에 축적되고 사업화 과정에서 종사자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며 농어촌 여성 및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음



〈그림 VI-6〉 지역순환 자원활용 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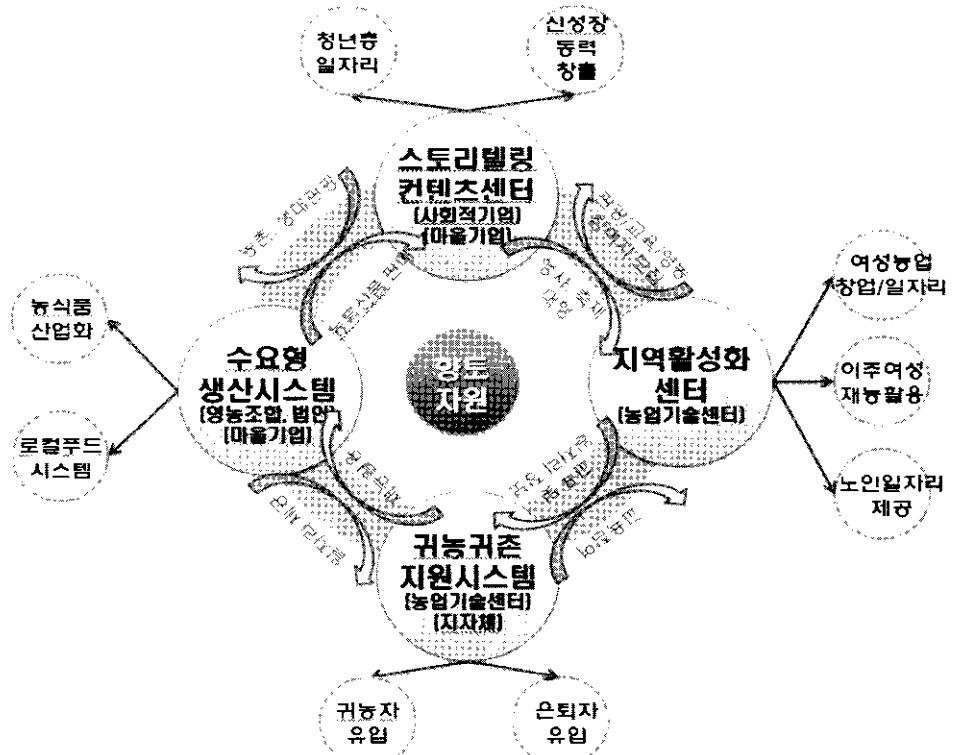
7.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1) 향토자원활용 통합적 발전모델

(1) 추진방안

■ 향토자원활용 통합적 발전모델

- 지역성과 향토성이 높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역사/문화 자원 콘텐츠사업을 중심으로 사업화하고 지역 내 여성, 노인 등 농어촌 인력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의 정착과 일자리 제공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함



〈그림 VI-7〉 향토자원 활용 통합적 발전 모델

- 각각의 기능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모델로 농어촌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보장하여 농어촌 인구 유입, 고령인구 및 여성농업인의 일자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단순히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깊은 기업형 농업인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리더역할이 가능하도록 함

■ 각 부문의 기능과 역할

-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마케팅은 산업화와 대량생산체제를 지향하기 보다는 지역 내 소비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는 규모화, 대형화보다는 스토리텔링, 음식, 전승/교육, 역사문화자원 해설, 축제추진과 같이 지역 내에서 가능한 부분의 우선사업화와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
- 노인, 여성, 이주여성, 귀농인 등의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어민들의 일자리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신규 사업 및 재능 발굴, 농업 생산 기술 및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농·특산물 및 역사문화 콘텐츠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함

- 농업의 특수성에 인해 즉각적인 소득발생이 어려우므로 농가소득창출 이전에 귀농과 귀촌인의 생계 및 소득이 유지되도록 향토자원 관련 일자리를 소개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 내 자원과 소득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추진전략

■ 수요 대응형 생산시스템(농가중심)

- 농작물 생산에 있어 대량화 규모화하기 보다는 지역 내 소비와 인접지역 도시민을 대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약재배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단계에서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농가에서는 생산과 품질관리에만 집중하고 농작물의 유통 및 마케팅은 영농조합 또는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가공시설 도입 및 설치 시 사업비에 비해 판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미비하므로 가공단계에 있어서도 무리한 가공시설 사업 투자보다는 지역 내 중소가공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향토성이 높은 두부, 장류, 절임류, 전통음식, 전통음료 등 가내수공업 형태의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최근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량생산형 가공품보다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어지는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성 있음

■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기업 육성

- 농어촌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기술의 전수 및 계승, 역사문화 관광지 안내, 고유의 문화를 통한 교육사업 등이 충분히 가능하고 농어촌관광과도 연계가 가능함
- 기존 사업들이 시설 건립에 집중되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였고 시설의 활용성도 크게 낮아 이제는 시설보다는 지역 내 농어촌지역의 인력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역사문화의 콘텐츠 사업은 짧은 충의 호응 및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새로운 가치자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운영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하는 사회적 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함

- 자원개발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은 젊은 층 중심의 사회적 기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내 향토자원 안내 및 해설, 농촌관광 운영 등은 농어촌 노인, 여성인력을 고용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활성화센터

-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고용은 도시와 크게 다르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일자리 정보 및 알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중점기관이 필요함
- 지역활성화센터는 농어촌지역에 여성농민, 이주여성, 노인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며 구직 희망자의 능력과 기술 정도 등을 정보화 하여 통합모델 상의 사업추진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알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초기 귀농·귀촌인은 생활유지 등에 관련된 소득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한 경우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착 까지 일자리 제공 및 알선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활성화센터는 단순히 지역 내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소개하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 향토자원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 현재 귀농·귀촌 지원은 정주여건, 영농 등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로 귀농귀촌 인의 일자리 만들기에는 소극적인 부분이 다소 있으므로 인구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고려해야 함
- 특히, 귀농귀촌 인력 중에 재능이 있어도 제대로 능력을 농어촌지역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정보구축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또 다른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고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역 내 일자리 정보와 더불어 정착과 동시에 일정 생활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발생 될 수 있도록 함(귀농 및 귀촌인구의 유인책으로 활용가능)

2) 향토자원 발굴 및 사업화 시스템 구축

(1) 추진방안

■ 향토자원 유형화 체계 구축과 DB화

- 각각의 향토자원을 자원 활용, 투입단계, 산업분류, 추진주체별로 유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향토자원을 유형별로 기록 및 분류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향토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통합DB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향토자원 활용사업이 어떠한 유형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각 시·군은 유사한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사업화되는지를 파악하여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향토자원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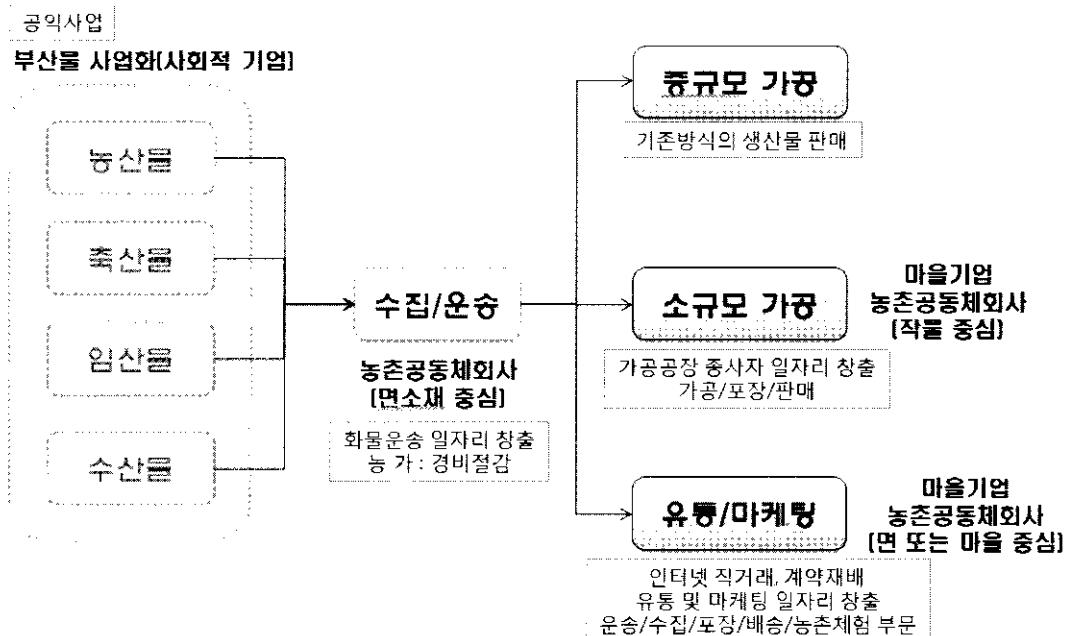
■ 향토자원 활용성 유형에 따른 사업모델 추진

- 향토자원의 활용성 유형에 따라 1차 생산물, 2차 가공형, 3차 서비스형 그리고 단회성 또는 부정기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형으로 구분하고자 함
- 1차 생산물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될 수 있으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가 가능한 생산물이나 벼의 도정, 가축의 도축, 열매의 박피 등의 생산물까지를 포함
- 2차 가공형은 농어촌공동체에서 외부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1차 생산물을 활용하여 발효, 단순가공, 부차적 자원으로의 이용, 전통방식의 농식품까지만을 포함하도록 함
- 3차 서비스형은 노하우, 노웨어, 노후의 3가지로 구분하고 음식, 전통기술, 명품, 특산품은 농특산물 상품과 교육/전수사업 까지도 포함하고 유물, 유적지, 문화를 활용하여 장소마케팅 및 농촌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함
- 프로젝트형은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로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며 지역축제의 기획과 개발은 전문가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고 운영 및 관리는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전략

■ 1차 생산물 활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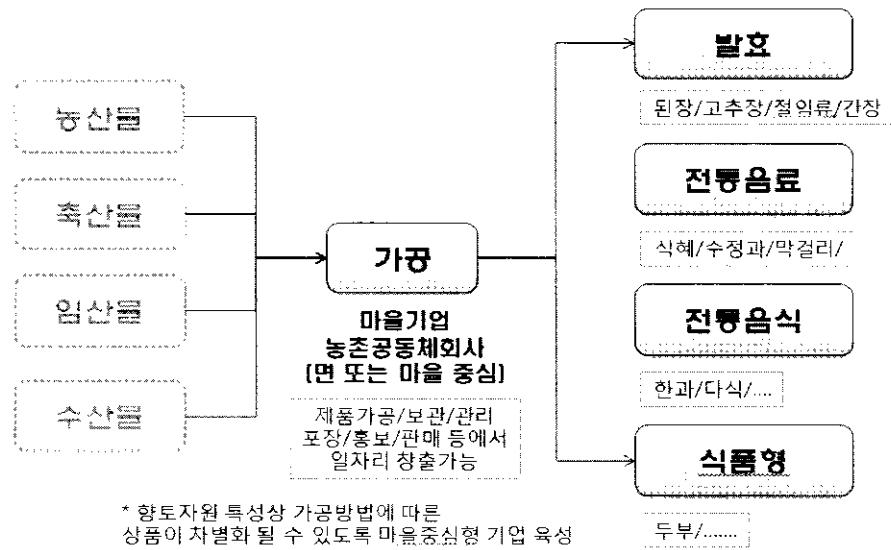
- 1차 생산물은 소비자 또는 위탁 판매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단계와 가공단계(중 규모와 소규모), 농가 또는 공동체에서 직접 유통 및 마케팅 과정이 추가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중규모 가공은 고가의 설비 내지는 가공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공으로 지역 특화발전 전략에 의해 조성된 설비를 이용하거나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회사 영역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서는 제외함
- 소규모 가공은 1차 생산물에서는 단순 가공으로 세척, 포장, 배송 등을 포함한 가공으로 농가단위 소규모가공은 무급 봉사형 일자리라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미비하고 생산물의 품질, 생산비 투자 등이 불합리함
- 따라서 작물별로 유사한 설비가 필요하므로 작물중심의 마을기업 내지는 농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하고 가공과정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
- 소규모 가공내지는 생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마케팅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루어지는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여성농업인, 노인 등이 고노동력을 피하는 단순직무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소규모 가공내지는 생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마케팅은 도농 간 직거래, 계약재배, 인터넷 직거래 등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가능하고 감성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그림 VI-8〉 1차 생산물 추진방안

■ 2차 가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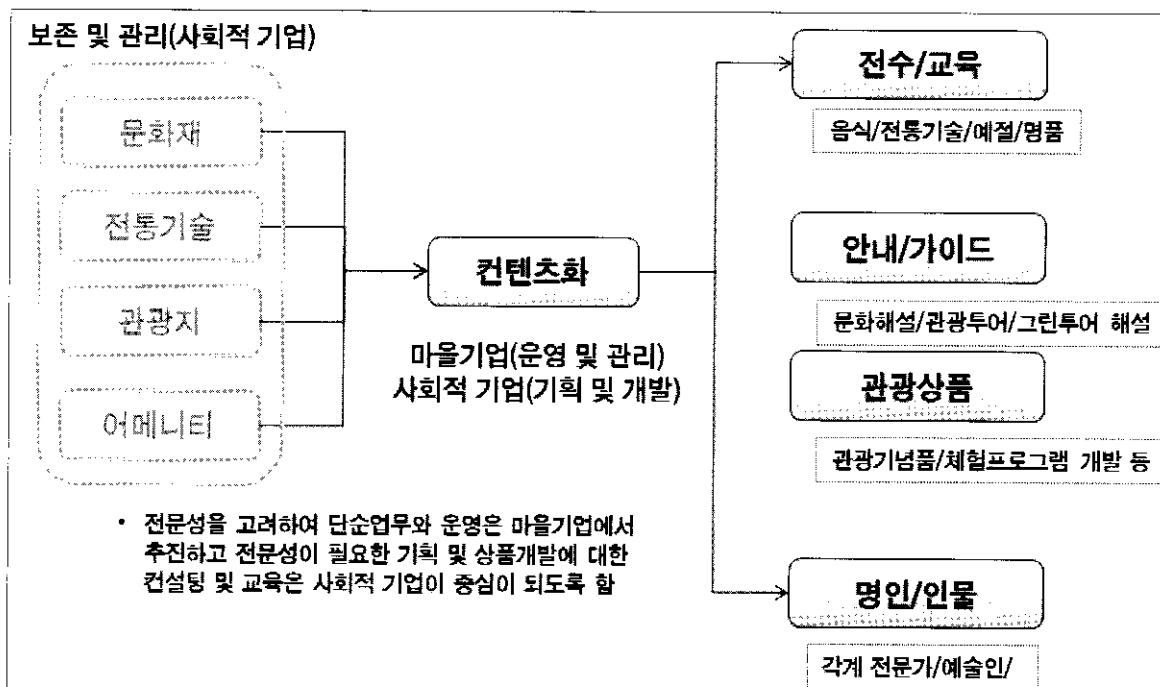
- 2차 가공형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오래전부터 내려오거나 그 지역만의 고유한 가공방법 내지는 비법을 활용하여 가공하고 상품화를 추진함
-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생산에 의한 명품화를 추진하여 부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지역공동체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젊은 층 또는 귀농·귀촌의 재능을 활용하여 가공품의 현대화 내지는 차별화를 도입한다면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많은 귀농·귀촌 인구를 마을 또는 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음
- 고도의 기술력과 고가의 시설 등이 요구되는 가공 산업은 지양하며 지역 내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음료나 식품 등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건강보조제와 같이 그 효능이 입증되어야 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의 지역전략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운영체는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 기반형 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그림 VI-9〉 2차 가공형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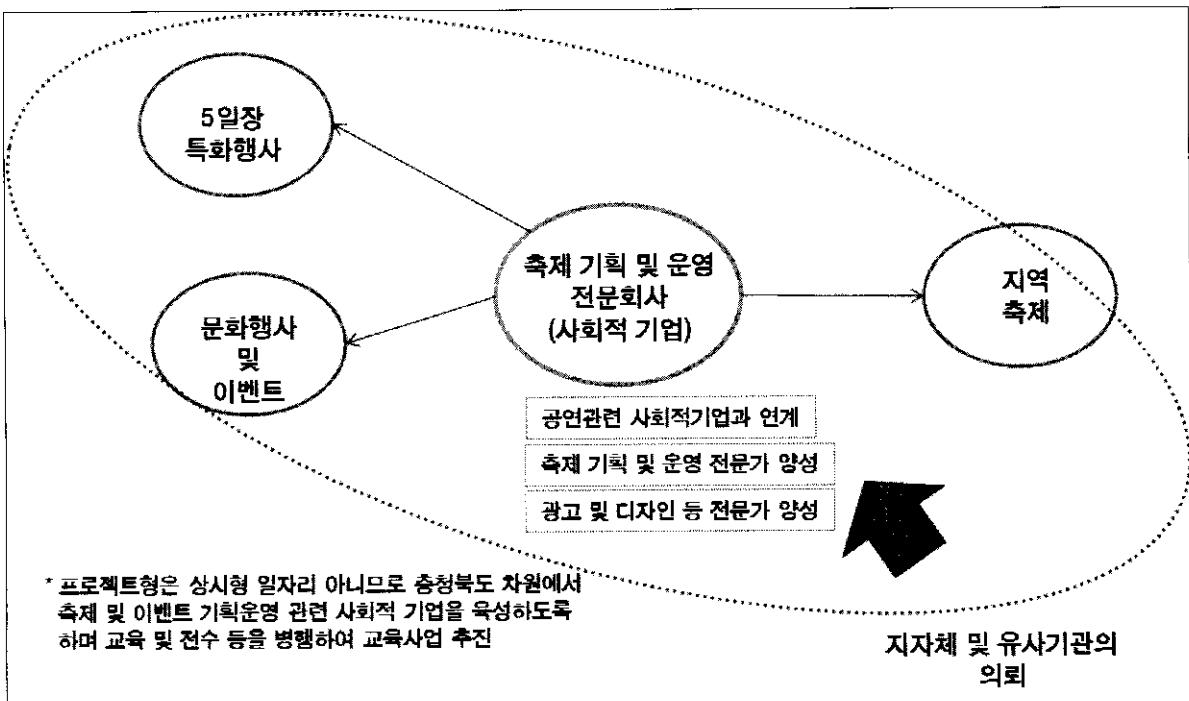
■ 3차 서비스형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3차 서비스형에는 음식, 전통기술, 명품, 특산품 등의 제조기술 및 방법을 가지고 전수나 기술교육의 사업이 가능한 노하우형은 지도자 및 전수자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 함
- 관광지, 문화재, 유명한 장소, 경관이 우수한 곳,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의 장소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노웨어형은 관광안내, 해설사, 관광기념품 판매, 관광투어,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함
- 역사적 인물, 예술가, 문학가, 전문가, 명인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창조하는 노후형은 전시관 안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 함
- 3차 서비스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지역을 리드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기획 및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식 창조형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추진 함
- 3차 서비스형의 운영 및 관리는 자원이 속해 있는 마을 또는 지역에서 마을기업의 형태로 추진하여 농어촌의 노인, 여성 등 비생계형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나 관광지의 경우에는 보존 및 관리, 유지보수 등의 부가적인 사업들이 생성될 수 있는데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로젝트형

- 프로젝트형은 지역의 축제 및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사업이며 5일장,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
- 프로젝트형 특성상 상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단회성 사업이 많으므로 각 지역별로 관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축제, 이벤트 관련 기획 및 운영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시·군 및 단체에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로젝트형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속해있는 도시의 공연 관련 사회적 기업을 연계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형은 지역대학의 문화 및 관광학과 졸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관련 일자리 희망자에게는 교육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제공 또한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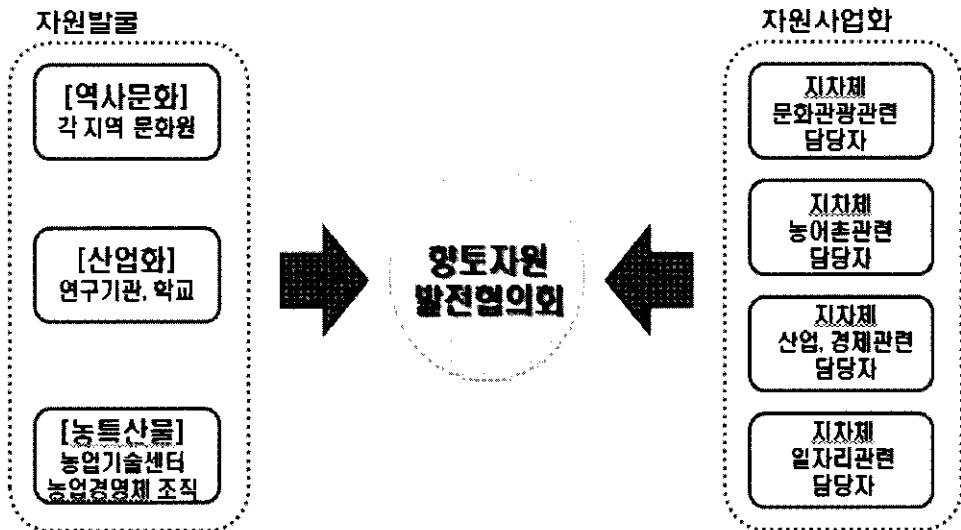


〈그림 VI-11〉 프로젝트형 추진방안

3) 향토자원발전협의회 운영

■ 향토자원 관련 통합 기구 구축

- 향토자원에 대한 통합적 추진기구가 없어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사업들이 해당 부서별로 분산되어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중심의 협의회를 구축함
- 향토자원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자원 발굴 및 산업화 가능성 파악 및 진단, 향토 자원 활용 사업화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토자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그림 VI-12〉 향토자원발전협의회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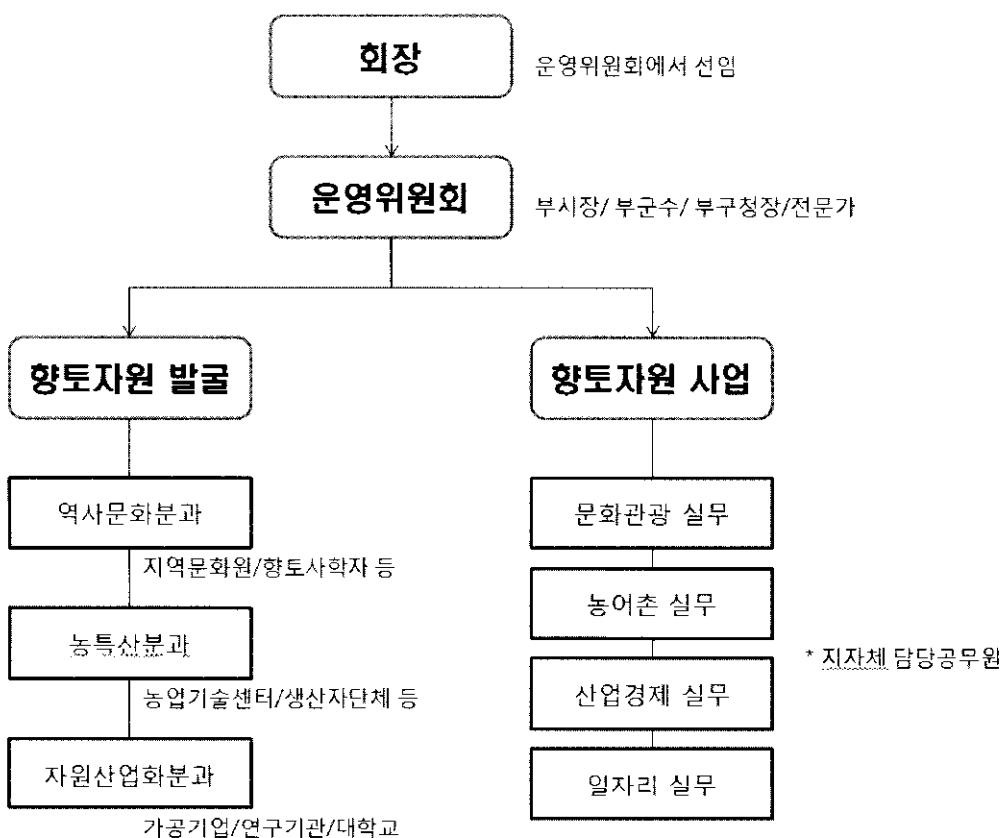
■ 향토자원 관련 통합 기구 운영방향

- 자원발굴은 그 지역자원을 잘 알고 있는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기관의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 내 연구기관 및 학교 교수가 참여 될 수 있도록 함
- 자원의 사업화는 발굴된 자원을 산업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의 문화관광, 농어촌, 산업 및 경제, 일자리 창출관련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여 사업화 추진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향토자원발전협의회의 운영진은 시·군의 관심을 중대시키기 위해 부시장, 부군수 등이 되며 대학교수, 연구원, 지역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및 의결,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함

■ 향토자원발전협의회 조직

- 향토자원 발굴관련 조직은 역사문화분과, 농특산분과, 자원산업화 분과로 나뉘어 향토자원 발굴과 유형화 분류, 데이터베이스화, 산업화 여부 및 정도 등을 논의하고 심사를 진행함
- 향토자원 발굴관련 조직구성은 역사문화분과는 지역문화원 관계자, 향토사학자 등으로 구성하고 농·특산분과는 농업기술센터, 농어업생산자 단체 중에 전문가를 선정하고 자원산업화분과는 가공기업인, 연구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함
- 향토자원 사업관련 조직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

- 관광, 농어촌, 산업경제, 일자리 관련 자치단체 담당자로 구성되고 추진완료 사업, 추진 중인 사업,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실무를 논의함
- 운영위원회는 시군별 부시장, 부군수가 참여하도록 하여 향토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사업대상 선정 및 심사, 사업추진 애로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함
 -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하며 충청북도 공직자가 당연직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음



〈그림 VI-13〉 향토자원발전협의회 조직안

■ 운영방안

- 운영위원회 정례회는 분기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및 심사가 있을 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함
- 부문별 향토자원 발굴과 사업에 관한 부문에 대한 분과별 회의는 분과 내부적으로 협의 하에 개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향토자원에 대한 발굴 및 사업화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각 자치단체 공직자가 향토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함

8. 충북형 귀농·귀촌 지원 체계

■ 영농기술 교육강화

-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농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기 위해 귀농하는 귀농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초기 농업(재배)기술 및 농업경영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귀농자들을 위한 농업교육은 물론 농업교육비 지원 정책이 있긴 하지만 교육 가능한 인원도 한정돼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 전부터 귀농 후까지 연계되는 교육과 재배 가능한 작목, 다양한 재배 기술에 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임

■ 안정적인 수익모델 제시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귀농자의 경우 농업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영농실패 위험이 높고 영농에 성공한다고 해도 자본투자 회수기간 역시 길기 때문에 귀농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초기 귀농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획일적 모델이라도 충청북도 기후와 지역조건에 맞는 작목들의 농업모델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반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

■ 공가·폐가를 활용한 맞춤형 주거공간 마련

-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에서의 생활로 인해 생겨나는 신경질환,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 등을 치료 및 치유하고자 휴양, 요양하기 위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1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자녀들을 산촌으로 유학을 보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 중 학생 혼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가족이 함께 농촌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어 특별한 일정기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보 수집을 좀 더 체계화하고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원할 때마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표 VI-19〉 사회적일자리 대표 사례

사회적일자리 대표 사례	비고
마을간사	신활력사업
마을사무장	권역사업, 정보화마을...
산촌매니저	산림청
무진장좋은마을네트워크	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농촌복지센터 노인간병	노동부
지역활성화센터의 나눔푸드	도시락사업 무료배달 등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센터	진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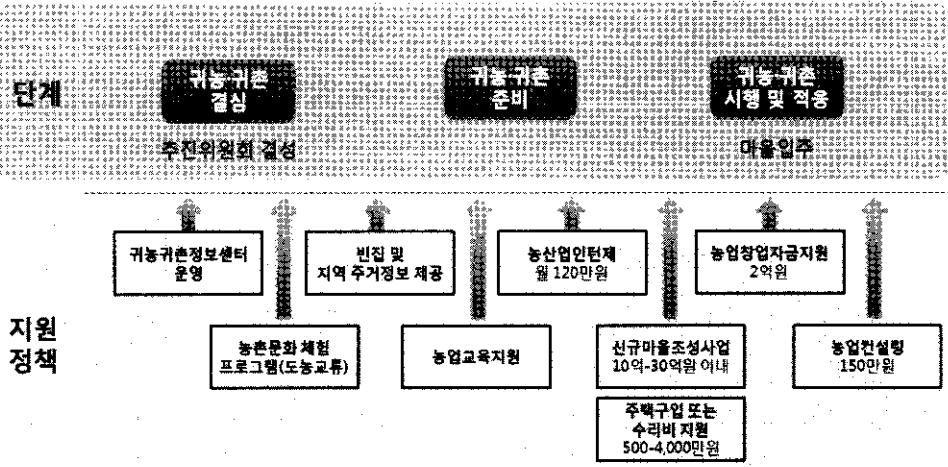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용

- 균특법 개정(‘09.4.22일 시행)으로 인해 2010년부터 광특회계 및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음
- 포괄보조사업 중 하나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의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외에는 도시민 보다는 지역주민(원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임
-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 등은 당연히 2차적으로는 도시민에게도 혜택이 주어지지만 직접적인 도시민 유치와는 연계가 되지 않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유치된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임
- 빈집 수리를 통한 임대 등 도시민 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한다면 사업의 목적인 인구 유지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귀농·귀촌 정책 연계 지원 받는 새로운 개념의 마을 조성

-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하여 농촌이주 결심에서 농촌정착 단계까지 다양한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지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연계되어 지지 않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비해 도시민 유치의 효과가 크지 않음

- 귀농·귀촌인들이 제안하고 계획 개발하며, 이주 전부터 귀농·귀촌정보에서 귀농·귀촌까지 정부정책을 연계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마을을 조성함



〈그림 VI-14〉 정부정책 연계 지원 예시

■ 도시민 유치 전담부서 설치

- 도시민 유치 관련 정책은 체계적이고 타 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 효과가 큰 사업 특성 상 장기적인 목표 하에 진행되어야 해 담당자의 풍부한 정책사업 수행 경험이 필요함
- 정보제공에서 이주민의 정착 후 사후 지원까지 담당할 도시민 유치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충주시 도시민 유치 전담부서 설치 운영 중)
- 행정조직과 함께 지역주민, 기존 귀농·귀촌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공동 구성하여 효율성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민 유치 정책의 정확한 목적을 설정

■ 논스톱 지원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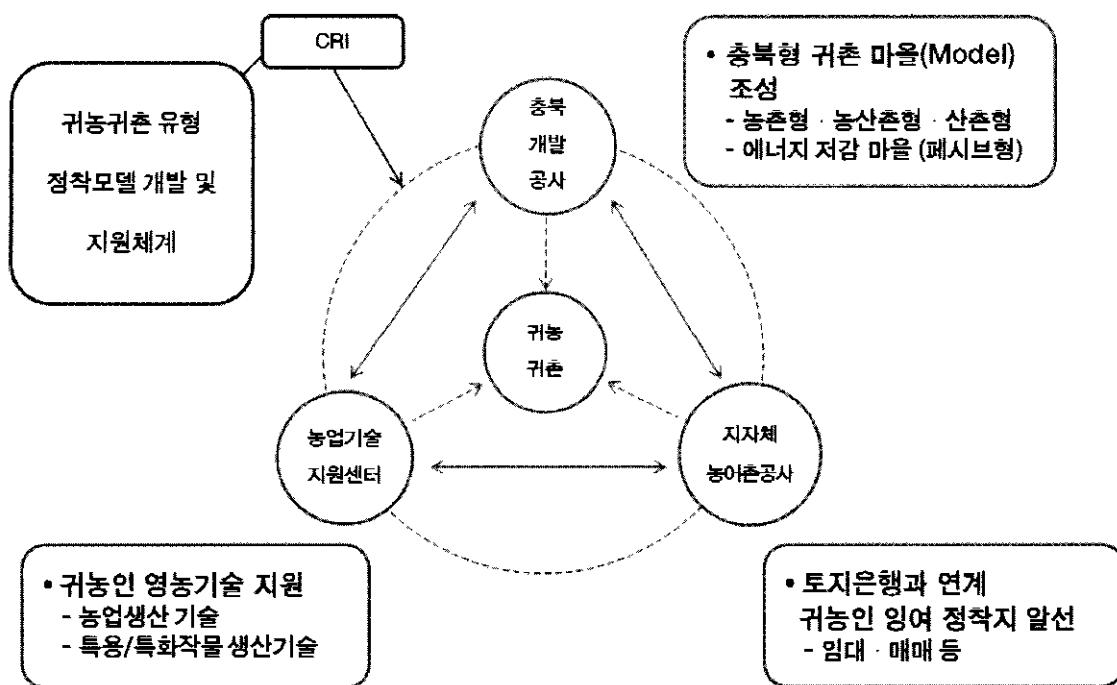
- 도시민 유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지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귀농·귀촌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고 있음
- 도시민이 귀농·귀촌 결심 단계에서 사업 지원 신청 시 별도의 재신청이 없더라도 간단한 심사 후 도농교류에서 빈집정보 제공, 주택지원(주택수리비지원), 농업교육, 농산업인턴제, 농업창업자금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지원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기임대모델 개발

- 도시민 이주자들이 농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귀농·중심의 지역 빈집, 임대 토지를 조사하여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
- 빈집 및 임대 토지의 장기 임대는 특히 경제력이 낮은 귀농자와 요양하기 위해 농촌에서 생활하는 도시민에게는 중요한 사항임
- 개인 대 개인이 계약이 아닌 행정기관 혹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공공성을 보장함

■ 충북 농업경영 모델개발

- 초기 귀농·귀촌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기후와 지역조건에 맞는 작목들의 농업모델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반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
- 충북 기후와 지역조건에 맞는 작목들의 농업모델 매뉴얼 개발 및 보급함
- 비교적 재배가 쉽고 재배 기간이 짧은 작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역별, 재배 기간별, 시기별, 수익별 등으로 구분함
- 씨앗 구매, 파종 등 재배에서 유통까지 알기 쉽게 구성하여 향후 유통체계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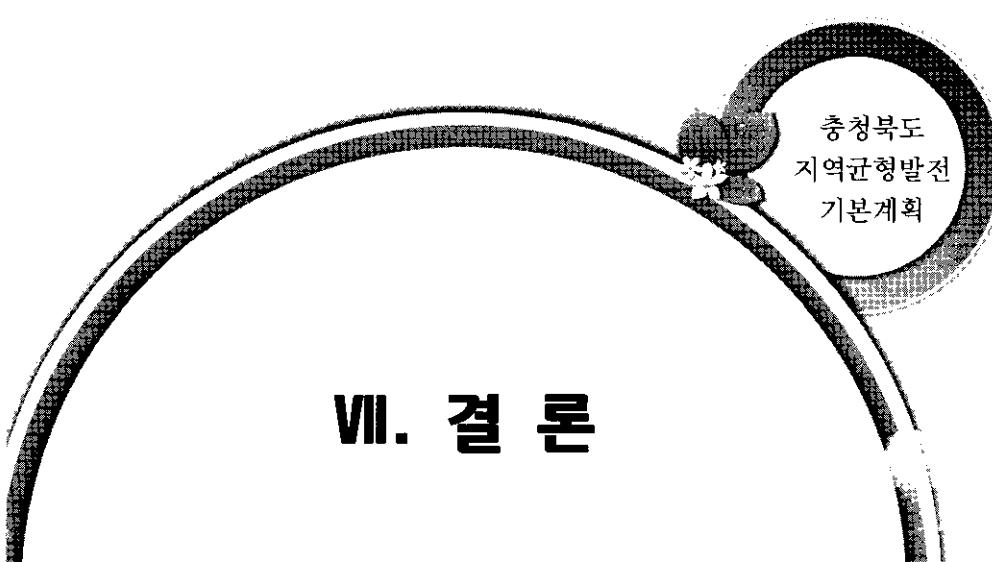


〈그림 VI-15〉 충북형 귀농·귀촌 지원 체계

9. 사업추진계획

구분	세부사업	단기사업 (3년 이내)	중기사업 (3년 ~ 5년)	장기사업 (6년 ~ 10년)
충북 균형발전정책 재정립	충북 균형발전 개념	○		
	목표 달성 평가 지표 구축	○		
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구축	원인 해결형 지원조직 구축	균형발전추진단(안) 운영 균형발전기획평가단(안) 구성		○
	권역별 거점기능	남북부권 출장소 기능 강화	○	
	지원체계 구축	권역별 사업단 기능 확대	○	
	균형발전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적극적 균형발전사업 추진방식 전환	○	
균형발전정책 제도개선		지역균형발전 조례 수정·보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	
	도비보조금 제도 개선	도비보조금 분야별 기준 보조율 조정		○
		도비보조금 분야 확대		○
		균형발전사업의 사도자율편성사업 연계 추진	○	
		낙후지역 졸업제도 및 성장촉진지역(사업) 지정	○	
		전문관제도 도입	○	
		남·북부권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	○	

구분	세부사업	단기사업 (3년 이내)	중기사업 (3년 ~ 5년)	장기사업 (6년 ~ 10년)
균형발전정책 제도개선	도정 정책분석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수립	○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	
	균형발전사업 매뉴얼 작성	○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충북 균형발전사업 선정추진 (읍면별 모자이크 사업)	○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 강화전략	권역별 시군간 균형발전 협약 체결	○		
	시군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포럼 운영	○		
	현장중심 주민 워크샵 개최	○		
	충북커뮤니티 지원센터 운영		○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향토자원활용 통합적 발전모델 구축		○	
	향토자원 발굴 및 사업화 시스템 구축			○
	향토자원발전협의회 운영			○
충북형 귀농·귀촌 지원체계	충북형 귀농·귀촌 지원체계 구축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VII. 결 론



1. 결론

- 그동안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지역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충북의 경우에도 청주권(충청북도 면적의 13.0%)과 타 시·군간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이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균형발전도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을 통해 충청북도 내 12개 시군에 대한 발전도를 측정한 결과 낙후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와 군비를 매칭 펀드방식에 의해 차등 지원하는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1단계 균형발전사업 : 2006~2011년(보은, 옥천, 영동, 제천, 증평, 괴산)
 - 2단계 균형발전사업 : 2012~2016년(보은, 옥천, 영동, 제천, 증평, 괴산, 청원)
- 또한 그간 누적되어 온 남부 및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낙후지역을 상향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군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안정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 있는 발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선 5기에는 균형발전정책을 도정의 5대 목표로 선정하여 지역 간, 물리적·정서적 발전격차 해소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그동안 충북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 마지막으로 충북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실천계획 및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도내 각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각 지역별 사업들에 대하여 지역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차원의 사업집행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사업주체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을 배분하고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낙후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간 위화감이 표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간 협력체제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 둘째, 균형발전정책기조의 일관성원칙 고수

-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임. 첫째는 지역의 자발적 발전성 제고의 원칙임. 이를 위해서 시·군 지역의 자발적 의지 창출과 발전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두 번째는 형평성과 효율성간 조화의 원칙으로 문화·복지부문은 형평성의 원리, 지역경제·개발부문은 특화발전을 위한 경쟁우위 원리를 도입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지원하여야 함. 셋째는 일관성과 지속성의 원칙으로 기존의 좋은 정책은 유지·발전시키고, 일시적이고 단기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토록 함. 네 번째는 권역단위 정책 우선의 원칙으로 권역별로 발전전략과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함으로써 상생화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함

○ 셋째, 지역 정체성 부각사업 육성

- 충청북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설정은 각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단순히 지역 선심성 사업추진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선심성 사업추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고 사업 계획 시 민선학관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자체 자문평가를 통해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의 목표가 정해지면 이러한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목표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사업목표에 맞는 반드시 필요한 세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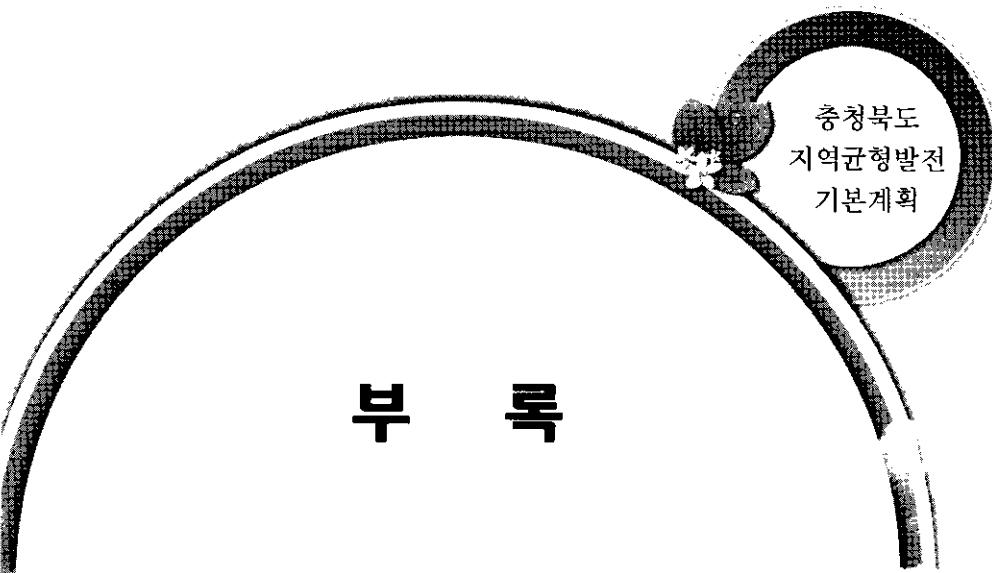
-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결과나 홍보시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결과물에 대한 공동 홍보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지역 선심성 정책이 아닌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함. 또한,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전문가 구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이와 함께, 대상권역 담당자의 교육 강화를 통해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 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균형발전사업의 성공은 예산 등 지원체계와 함께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임

○ 다섯째,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전담 컨설팅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달성을,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단계부터 전문가가 포함된 컨설팅은 꼭 필요한 부분임

- 따라서, 지역발전 사업에 대하여 총괄하여 컨설팅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별로 사업 착수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년 1회씩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진척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균형발전이란 쉽게 도달하기 어려우며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전 도민이 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 완화라는 측면에서 성과위주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부 록



부록 1 :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충북, 충남, 경남)

1) 충청북도

(1)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2007-04-13 조례 제 2998호

(일부개정) 2010-01-01 조례 제 3224호

(일부개정) 2011-04-01 조례 제 3354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 34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1. “지역균형발전”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 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낙후지 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낙후지역” 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개정 2011. 4. 1>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등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 ②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1.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 ④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낙후지 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0. 4.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제7조(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 ①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 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정수액의 5퍼센트 이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 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개정 2011. 4. 1>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4. 차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예비비 등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낙후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

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

제14조(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 3. 30〉

[전조개정 2010. 1. 1]

제15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2. 위촉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충청북도정책자문단 위원 2명, 지역발전연구센터 2명,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

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2. 3. 30)〕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2012. 3. 30)〕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2012. 3. 30)〕

제18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 ①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전담팀은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 권역내의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12. 3. 30)〕

제5장 보 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3. 30〉
[제16조에서 이동<2012. 3. 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2. 3. 30>]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낙후도가 음(-)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 1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조례 제3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30 조례 제3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05-18 규칙 제 2575호
(일부개정) 2008-07-01 규칙 제 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1-29 규칙 제 2664호
(일부개정) 2010-08-11 규칙 제 2678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1-25 규칙 제 2724호
(일부개정) 2012-09-14 규칙 제 27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①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필요시에 충청북도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충청북도지사는 자금의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 1. 29, 2010. 8. 11, 2011. 11. 25〉

1. 정수관, 경리관 : 균형건설국장
2. 분임정수관, 분임경리관 : 균형개발과장
3. 지출원 : 균형개발과 균형발전팀장

③ 제2항에 의한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1. 11. 25〉

제3조(세출예산 지원 비율) 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세출 예산 지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세출예산 지원비율 및 대상지역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불균형실태조사에 의한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 9. 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29 규칙 제2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규칙 제267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4 규칙 제2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충청남도

(1)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2007-03-30 조례 제 3252호.

(일부개정) 2007-10-01 조례 제 3274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330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7-01 조례 제 332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개정) 2009-06-01 조례 제 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3567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에서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내 각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매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②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도지사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

제9조(설치와 기능) ①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06.01, 2011.01.01>

1. 당연직은 도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국장, 복지보건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인,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3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 (생략)
③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을 “투자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⑥ (생략)
⑦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투자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수산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을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국장, 복지보건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교통 향만국장” 으로 한다.
⑧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 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 을, “농산과” 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 를, “주민지원과” 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 를, “개발과” 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 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05-10 규칙 제 3001호
(일부개정) 2007-10-01 규칙 제 3010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31 규칙 제 3022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3.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4.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는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산출한다.
 2. 인구의 고령화가 심한 정도는 전년도 말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3.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정도는 최근 총사업체 종사자비율(사업체의 총 종사자수를 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4.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한 정도는 최근 5년간 시·군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5. 지역소득 수준이 낮은 정도는 최근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6.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한 정도는 최근 도로율(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개통도로의 연장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로 산출한다.
- ②시·군별 발전수준 분석은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표준화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다만, 성장거점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시·군은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의 1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①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지원대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기획관리실장
2. 분임징수관 : 균형발전담당관
3.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경리관 : 세무회계과장
5. 채권관리관 : 균형발전담당관
6. 채무관리관 : 균형발전담당관
7. 지출원 :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8. 수입금출납원 : 균형발전담당관 균형개발담당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규칙 제3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상남도

(1)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2011-08-18 조례 제 3617호
(일부개정) 2011-12-29 조례 제 367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이란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 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 ② 개발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별 발전수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 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동남권발전국장, 농수산해양국장, 도시방재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3명,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환경분야 전문가,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회 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3670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제24조제2항 관련 별표(소방서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균형발전사업단장, 농수산해양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동남권발전국장, 농수산해양국장, 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④~(31) 생략

(2)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04-05 규칙 제 29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구부문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
- 2. 재정 및 소득부문 : 최근 5년간 재정력지수와 소득세할주민세총액

3. 고용 및 산업부문 : 천명당 사업체수(50인 이상 사업체 수)와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4. 공공인프라부문 : 도로율과 상하수도보급률
 5. 생활여건 및 환경부문 : 노후주택비율(1980년 이전 주택수를 주택수로 나눈 값)과 1인당 공원면적
 6. 교육 및 문화부문 : 면적당 학교수와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7. 보건 및 복지부문 : 천명당 의사수와 영유아(6세 이하) 천명당 보육시설수
- ② 시·군별 발전수준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표준화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제3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군별 개발계획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차등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의거 시·군별 발전수준을 표준화 한 종합점수에 의한 지원
2. 전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3. 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시·군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지원

제6조(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동남권발전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균형발전과장
3.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 균형발전과장
4.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균형발전과 균형정책담당사무관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록 2 : 2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 방안

1.1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방안

1) 사업 추진 배경

- 충청북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역발전도가 음(-)인 6개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을 대상으로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을 주요사업을 시행해왔음
- 주요사업 내용 중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핵심사업인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규 사업으로 낙후지역별 1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왔음
- 2012년부터 시작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롭게 선정된 대상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민이 체감하고 효과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충청북도의 핵심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2)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방안

(1) 선정기준 및 유형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선정기준은 대상지역 시·군별 1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며 민선5기 도정 목표에 맞추어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선정·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업선하고,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지역의 자원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가급적 지원기간(5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이나 도비와 군비 투자를 확대하여 도차원의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대상인데 민자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 불투명성이 배제되고, 국비투자나 민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중심으로 하되 하드웨어보다는 기반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S/W사업이 우선적인 선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2) 주요 사업추진 내용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낙후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A그룹(괴산, 영동), B그룹(보은, 옥천), C그룹(증평, 단양), D그룹(제천)으로 대상지역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가 연간 178억원, 5년간 총 890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음. 예산확보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특별회계 계정), 광특 지역개발계정의 5%(특별회계 계정)이며, 지원근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표〉 2단계 사업추진 계획

-
- 사업기간 : 2012~2016(2단계)
 - 총사업비 : 연간 178억원, 5년간 총 890억원 (도비)
 - 대상지역 : 낙후지역 7개군

- A그룹(1) : 괴산, 영동	: 연 28억원(5년간 총140억원)
- B그룹(4) : 보은, 옥천	: 연 26억원(5년간 총130억원)
- C그룹(1) : 증평, 단양	: 연 24억원(5년간 총120억원)
- D그룹(1) : 제천	: 연 22억원(5년간 총110억원)
-

- 대상 시·군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 시·군별 사업내용 및 지원내역(단위 : 억원)》

시군	세 부 사 업	사업비 (합계)	도비	군비	기타
	총 계	1,501.8	890	510	101.8
괴산	식품바이오산업 육성 - 종합물류유통시설 건립, 한우체험마을 조성	258.5	140	75	43.5
영동	영동스마트농산업클러스터 육성 - 스마트와인산업 육성사업, 난계국악 산업화마케팅 사업	202.8	130	70	2.8
보은	성장동력 기반구축 - 동부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스포츠파크 기반조성	200	130	70	-
옥천	전략산업 성장동력 창출사업 - 옥천 첨단산업 육성, 제2 의료기기단지 기반구축	200	130	70	-
단양	관광단양 신성장전략 구축 -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 스카이워크&백두대간 테마체험장	200	130	70	-
증평	바이오&솔라밸리기반 구축 -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솔라밸리기반 구축	205	120	80	5
제천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 - 클러스터지원시스템 구축, 기술혁신사업&맞춤형 인력양성	235.5	110	75	50.5

(3) 평가·컨설팅 및 혁신역량 강화

- 2단계 사업추진에 있어 1단계 사업과 다른점은 평가·컨설팅 및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강화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먼저, 엄격한 평가관리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을 부여할 계획인데, 충북도와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매년 수시평가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년차인 2014년도에 중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고, 마지막년도인 2016년도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컨설팅 또한 충북도와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매년 시·군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군 자체적으로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컨설팅을 실시도록 할 계획임
-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성과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역리더 양성 등의 성과를 위한 사업임. 대상사업은 브랜드개발, 모니터링 및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훈련, 워크숍, 전문가 강의(교육) 등이며, 교육훈련 대상자는 운영자 등 사업추진 주체(체험마을 운영자, 관광업 종사자, 영농법인 운영자, 지역주민 등), 지역의 리더 양성을 위한 공무원, 민간인, 사회단체 등으로 하고 있음

1.2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내용

1) 보은군 : 성장동력 기반구축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 보은군은 최근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농산물 판매,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또한, 두 개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인구증가, 고용증대, 유동인구의 확대 등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업부문에서 감소된 농업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필요한 상황임
- 보은군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내부적 검토를 통하여, 그간의 성과를 보완하고 장기적 지역발전을 견인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스포츠 파크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활성화
 - 동부일반산업단지 및 첨단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 산업촉진 및 산업구조 재편
 -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인재양성 및 사업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강한 일터가 있는 보은

휴식과 문화가 있는 보은

지속가능 성장동력 기반구축

동부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
-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 농산업과 연계발전 추진

스포츠 파크 조성

-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 관광산업과 연계 발전 추진

지역역량혁신체계 구축

(2) 주요사업계획

■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

-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업지역의 한계를 탈피하고, 침체일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단시간 내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 스포츠 파크 조성

- 보은군은 전국단위의 각종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장의 중심지로 중부권 최상의 스포츠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존의 스포츠시설로는 완벽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시대 경쟁에 맞는 스포츠 시설 보강이 요구되고 있음. 위축되고 있는 속리산 관광산업을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방문객 증가 유도에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임

■ 혁신역량 강화사업

- 산업단지 및 스포츠 파크의 홍보 및 마케팅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의 이슈에 대한 정책화 여부를 위한 각종 토론회, 포럼 등의 개최로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타 지역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지 견학을 통해 주민, 지역리더, 공무원 등의 능력을 배양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자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구 분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성장동력 기반구축	동부일반 산업단지 기반 조성	- 산업단지 기반시설비(단지내 도로, 녹지조성 등) - 기타 산업단지 조성비 등	11,000
	스포츠 파크 조성	체육회관 건립, 레포츠 코스, 그라운드 골프장, 부대시설	8,500
	시설관리인력 양성 및 홍보 마케팅	교육훈련, 우수사례지역 탐방,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워크숍 등	500
혁신역량 강화사업			

(3) 전략사업 추진체계

- 산업단지 및 스포츠 파크 사업추진단에 4개의 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직속기관으로 자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총괄 팀은 산업단지 및 스포츠 파크 전체사업을 총괄하면서 자문평가단과 긴밀한 협조속에 각 팀별 사업을 모니터링 및 행정지원, 역량강화 사업, 발전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단지 조성 팀은 산업단지 조성의 전반적인 조정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조성사업, 분양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스포츠 파크 조성 팀은 스포츠 시설 건립 담당 및 전지훈련 부서와 협력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기획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 자문평가위원회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진단, 해결방안 자문, 자체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음

2) 옥천군 : 전략산업 성장 동력 창출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 보은군은 지난 2007년부터 충청북도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인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의료기기와 향토산업의 기반인 기계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왔음
-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기 구축된 하드웨어(의료기기 농공단지, 옥천전략 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행정기관 간 혁신 네트워크 형성)의 활성화 추진 시 의료기기산업의 지역 신성장 산업으로의 발

전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에 옥천의 의료기기 산업이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따라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옥천군내 정착된 기계부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의료기기 산업과 융·복화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 주요사업계획

■ 첨단산업 육성사업

-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규제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오염원 배출이 비교적 적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인 의료기기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충북 바이오밸리(오송·오창,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의 한축으로 옥천 의료기기밸리 거점 육성에 따라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의료기기 밸리 연계사업

- 바이오밸리의 남부권 거점 구축을 조기 실현하고 도정 정책에 부합하며, 옥천군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균형발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혁신역량 강화사업

- 지역사회 주체인 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에 필요한 리더를 양성하고, 균형발전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

구 분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전략 사업	첨단산업 육성사업	소 계	10,000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 부재매입, 건축공사	6,000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 클러스터운영, 마케팅, 보육, 인력 양성지원 등	4,000
	의료기기 빨리 연계사업 (제2 의료기기 단지 기반구축)	소 계	9,730
		단지내 순환 도로개설	3,730
		녹지공간 조성	6,000
	혁신 역량	소 계	270
		전략사업 협력단 운영 - 사업평가, 자문 및 컨설팅, 성과관리 등	45
		지역균형발전 교육 - 균형발전 리더양성 및 역량강화	225

(3) 전략사업 추진체계

- 전략사업 협력단을 두어 사업성과 평가와 자문역할을 하고, 고도화 사업지원기관을 두어 클러스터 관리, 사업평가, 집행, 성과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클러스터 대상 시험분석, 인증 및 기술 지원사업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3) 영동군 : 스마트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 영동군은 1차 산업인 포도 산업을 2차·3차 산업으로 융복합화하고 여기에 지역의 자산인 난계 박연 선생의 국악을 결합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촌문화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 박연선생의 탄생지인 영동이 지난 40여년간 육성해 온 국악을 와인이 어우러진
격조 높은 농촌문화관광사업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소득 증대원으로의 역할을
창출하고, 농업에 문화(국악)가 더해진 차별화 된 농촌문화산업으로 완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코자 함

Vision	풍요롭고 품위 있는 고장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영동 만들기	
목 표	농업(포도, 와인) · 문화(국악)를 연계한 SMART한 지역발전	
내 용	영동혁신주체 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 농산업혁신리더 육성
	영동스마트와인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와인 관광명소화 ▷ 영동와인 명품화/고부가가치화
	영동난계국악산업화 /마케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국악 관광명소화 ▷ 영동국악 마케팅

(2) 주요사업계획

■ 영동 스마트 와인산업 육성사업

-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을 통한 특화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을 창출하고 기업형 와이너리인 와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과 동반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영동군 와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또한, 국내 와인시장
의 폭발적인 성장세 유지에 따라 와인산업의 잠재력을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3차 산업을 유도, 견인하여 고부가가치
1, 2, 3차 융복합 포도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영동 난계국악 산업화/마케팅 사업

- 국악의 성지에 걸맞는 체류 · 체험형 국악타운 조성을 통한 국악 동호인 및 관
광객을 유치하고, 국악의 대중화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악의 메카로
성장 · 발전하고 교육 · 문화 · 관광을 연계하여 고용창출, 방문객증가, 소득 증대
등 지속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임

■ 혁신역량 강화사업

- 지역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산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혁신주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농산업 혁신리더 육성을 위해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고 영동농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선도농가 양성, 농업경영 마인드 재고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와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농가 와이너리 전문가 및 사업가로 성장, 와인명인을 육성할 계획임

구 분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전략 사업	영동 스마트 와인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와인 관광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테마공원 조성(체험장 및 전시 등) ■ 영동와인 명품화/고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와인 기술지원, 농가와인 육성, 영동와인 브랜드 홍보, 마케팅 등 	14,787.5
	영동 난계국악 산업화/마케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국악 관광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체험촌 건립(건축, 도로, 상하수도) ■ 영동국악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4,420
혁신 역량	영동 혁신주체 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협력단 구성, 혁신주체 네트워크 구축 ■ 농산업혁신리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영대학 운영, 와인 아카데미 운영 	1,080

(3) 전략사업 추진체계

- 지역발전협의회는 사업계획 자문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고, 전략산업 협력단은 지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정도로 구성 예정)하여 사업자문, 평가,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개 분과는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실과소간 정보 공유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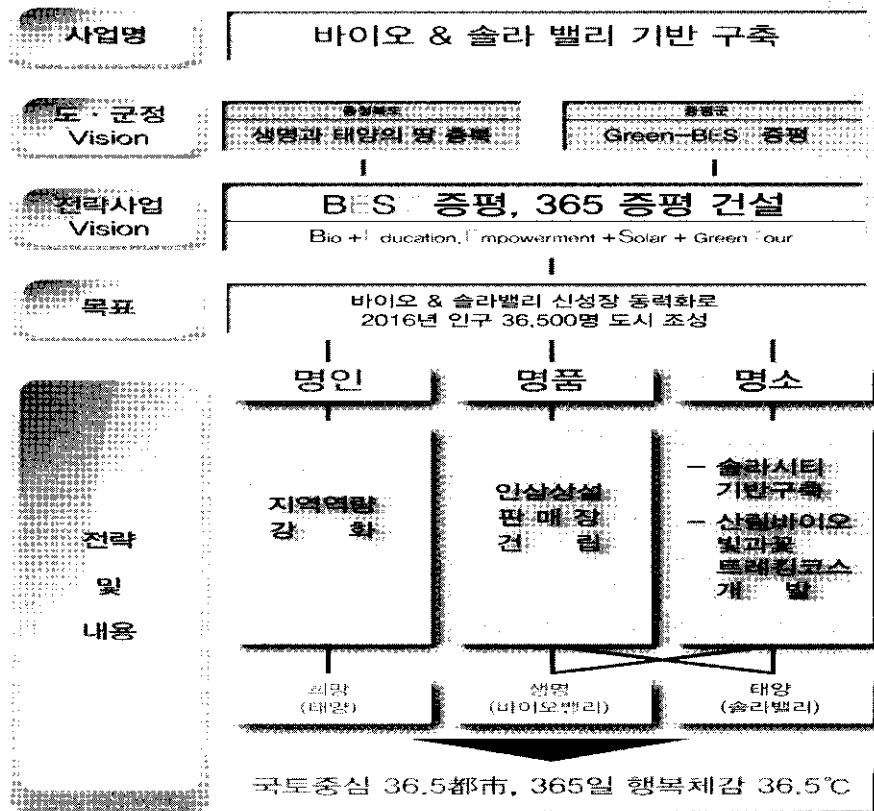
4) 증평군 : 바이오&솔라밸리 기반구축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 증평군은 태양광산업 중심의 증평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제2일반산업단

지 또한 태양광 기업의 집중 유치를 통한 녹색성장시대 고부가 가치 산업기반의 확보로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기업유치 등 산업적 측면의 발전과 함께 태양광 테마파크 및 태양광 테마거리, 태양광 테마 도서관건립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태양광 특화 도시로 육성하고, 이와 더불어 전국 최대 인삼 생산지인 인근 시·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1차 산업 인프라 및 지역의 홍삼 가공시설 등 2차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직판장(사설 판매장) 건립으로 3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주요사업계획

■ 인삼 상설 판매장 건립

- 충평군은 200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인삼재배 지역별 최적 기후조건으로 제시한 조건과 근접하고 있으며 최초의 인삼 재배지인 풍기 등과 유사한 기후적, 지리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고품질·직거래 마케팅을 위한 충평 인

삼관광휴게소와 연계한 인삼 직거래 판매장을 건립함으로써 이곳을 충북 인삼 유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산림 바이오 빛과 꽃 트레킹 코스 개발

- 중평 IC~괴산, 충주 통과 구간내 위치한 안자산 주변을 대상으로 지역 내 뿐 아니라 국내·외 탐방객 및 산행 인구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자연 생태공원 산책로 개설과 함께 MTB 코스 및 인근 군부대와 연계한 서바이벌 게임, 각개 전투 교장 등을 활용한 특성화 길을 조성할 계획임
- 빛(태양광)과 꽃(진달래)을 테마로 한 녹색길 조성으로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

■ 솔라밸리 기반조성

- 중평군은 중평읍 미암리 일대에 조성한 중평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6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태양광 산업, 1개 기업은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녹색에너지 중심 단지로 특성화하고 태양광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산업의 R&D·인력양성 추진과 함께 태양광산업 중심의 녹색테마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의 특화발전 및 부가가치를 높이고 솔라밸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쟁력을 태양광 테마에서 찾고자 함

■ 지역 역량강화 사업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농촌개발 주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부대, 마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균형발전 지원협력단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임

구 분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바이오 & 솔 라 밸 리 기 반 구 축	인삼상설 판 매 장 전 립 (인삼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평 인삼관광휴게소(농특산품판매장,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인삼 생산 농가 중심의 상설 판매장 전립운영 	3,000
	산림바이오 빛과 꽃 트 레 킹 코스개발 (산림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의 숲길, 레포츠 시설 (MTB 코스, 37사단 연계 서바이벌 게임장), 특성화 꽃나무 숲 조성을 통하여 빛과 꽃을 테마로한 복합 관광 코스 개발 	5,000
	솔라밸리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 • 세미나실 등의 설치를 통한 복합문화공간화로 주민 대상 야간 학습 및 역량강화 거점센터 구축 ○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솔라시티 조성 • 태양광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태양광 조형물, 태양광 승강장 시설 등 태양광 특화 도시 조성 • Bike-Road와 연계한 태양광 가로등 디자인화와 태양광 테마공원 및 태양광 테마거리 조성 ○ 태양광 전문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지원 • 제2일반산업단지의 태양광 중심 산업단지 조성 	12,100
혁신 역량	지역역량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을 포함한 산학·연 연계협력형 바이오&솔라분야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사업협력 지원단(컨설팅 및 자문단) 운영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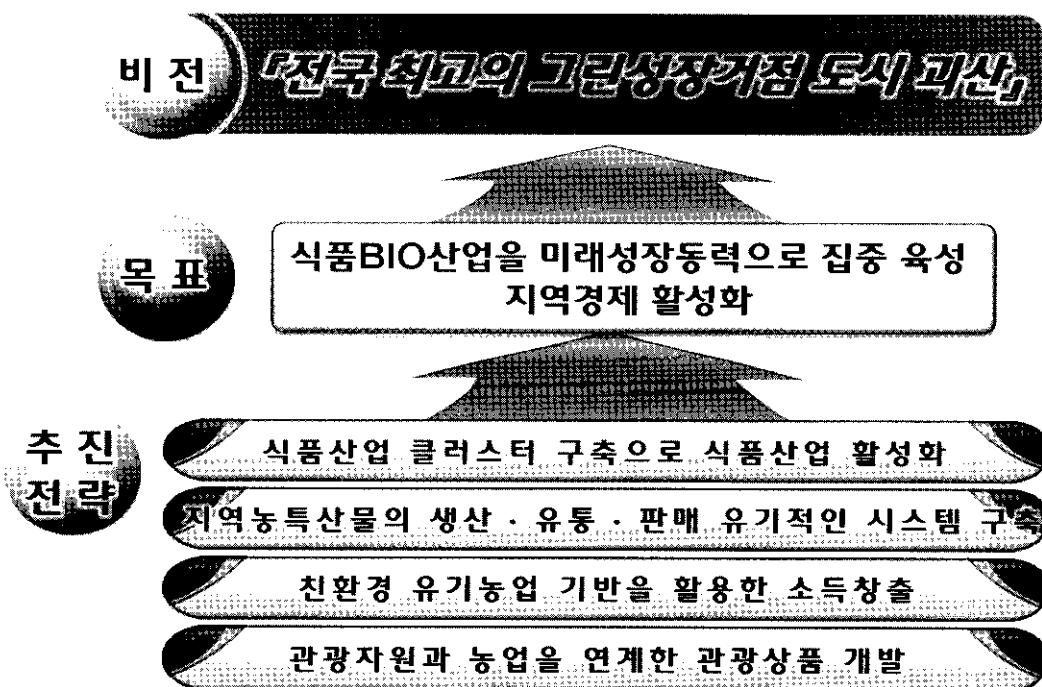
(3) 전략사업 추진체계

- 인삼·태양광·역량강화·관광부문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의 효율적이고 사업간 상호 연계 추진을 위하여, 군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기획·조정은 물론 평가, 역량강화 등 종합적인 행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임
- 아울러 단위 사업내에서 다양한 기술과 방법이 상호 조화롭게 융·복화되어야만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성과 또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단위 사업별 자문단 운영, 벤치마킹, 워크숍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을 구성하여 총괄적인 컨설팅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5) 괴산군 : 식품바이오 산업 육성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 괴산군은 충청북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의 권역권 특화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송 의약바이오, 제천 한방바이오와 연계하여 괴산의 식품바이오산업을 충청북도 권역별 발전축으로 육성하려고 함. 특히, 유기식품산업단지, 청정푸드 밸리산업단지, 발효식품농공단지, 장류식품단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향토식품산업육성사업 등 지역내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식품기업 입주지원 및 육성, 연관산업을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산지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기후변화 및 한미FTA 등에 대비한 농업시설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산막이옛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과 한우고급육생산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대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고, 학교급식, 학생군사학교, 중원대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사업계획

■ 기반구축사업

- 식품산업 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연관산업 유치 등 식품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식품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창구를 위해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그리고 산지 시설, 조직의 통합과 관리주체의 단일화를 통해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대응력 증대를 위해 농산물 물류기지화 구축, 산지농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함

■ 체험관광사업

- 국토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명산과 계곡이 많아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친환경농업군으로서 최고품질의 한우생산지를 활용하여 도시민의 사육체험과 농촌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산인프라시설을 건립하고 도시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한우고기 제공 및 사육체험으로 축산과 관광이 상생하는 새로운 도농발전의 모델을 개발코자 함

■ 소득증대사업

- 잣은 기상이변 및 친환경인증 추세 등으로 노지재배에서 비가림 시설로의 재배 방식 전환의 수요가 증가하고, 사업참여 농가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비가림 재배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역량강화 사업

-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식품산업육성인재 양성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식품산업의 이해, 혁신마인드, 리더십 경영 및 세계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지역협력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리더 양성 및 특성화 교육을 운영할 계획임

구분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식품Bio산업 육성 사업	기반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지원센터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 연구실, 창업보육실 등 ■ 농산물 물류기지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유통지원센터 리모델링 ■ 산지농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중) ■ 산지농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소) 	12,700
	체험관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축산시설(고급육생산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축사, 체험시설, 판매시식장 ■ 맞춤형 한우직매장 	4,000
	소득증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하우스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하우스 300동 정도 	8,855
혁신역량	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 교육 ■ 벤처마킹 등 현장학습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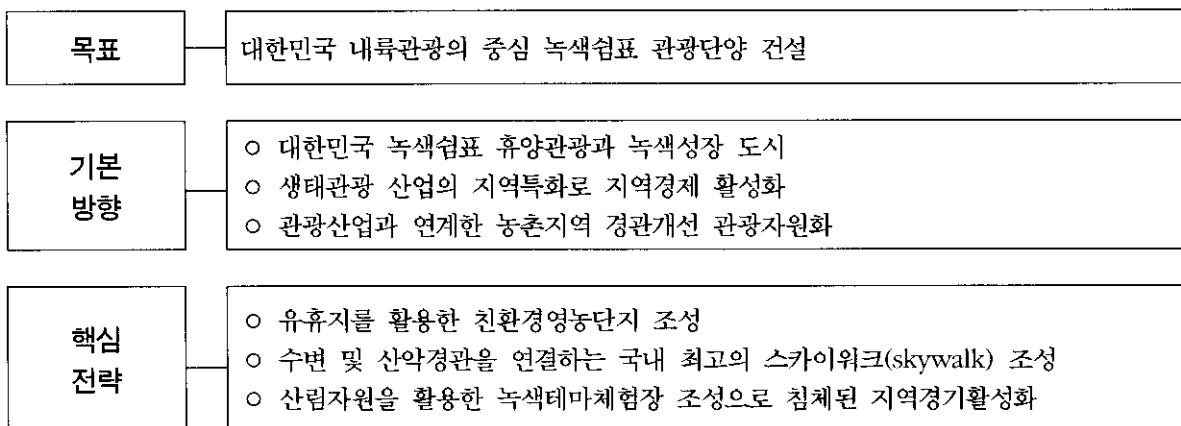
(3) 전략사업 추진체계

- 실무차원에서는 지역개발실장이 추진반장으로 업무를 실무에서 전담하며, 추진 단내 사업의 총괄 관리팀, 식품산업육성지원팀, 농산물유통지원팀, 체험관광지원팀, 소득증대지원팀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또한,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실무에서 수립된 사업계획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한 점검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사업추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단양군 : 대한민국 녹색쉼표 전략 구축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 단양군은 지역경관개선을 위해 수려한 수변 및 산악경관을 연결하는 “느림보미학” 의 트래킹을 위한 스카이워크(skywalk:하늘길)를 조성 국내 최고의 수변 하늘길로 자리매김하고, 스카이워크 조성 및 백두대간 녹색 체험장 조성을 통한 체험시설 관련 더 많은 일자리 제공 및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음
- 단양군 발전협의회 포럼운영 및 농촌체험마을 순회교육을 통하여 마을리더를 육성하고, 관광과 체험을 연계한 지역 인프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마을리더 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의 역량강화를 강화코자 함



(2) 주요사업계획

■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

- 소백산 청정 자연을 활용한 화전민가를 재현하여 운영중인 소백산 화전민촌과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산약초 단지를 활용하여 가족단위 체험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휴양시설과 산약초 단지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활용한 숲 치유 시설을 도입하여 휴양과 치유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휴지를 우량농지화하여 고소득 작물의 재배유도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도시와 농촌이 상생·소통·화합의 나눔가득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지역농산물 판매확대를 할 계획임. 유 휴산림에 친환경 과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직판 마케팅으로 도시민과 방문객을 유도한 수익창출로 귀농인의 안정적 귀농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

- 단순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관람형 관광에서 레저와 결합된 체험형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 관광자원의 가치를 중대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종합형·체류형 관광자원을 구축할 계획임
- 남한강 수변자원, 적성산성, 수양개 문화자원을 연계하고 단양읍과 상생하는 특 화된 사업으로서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성지구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단양관광의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

- 단양 대강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과 소재를 이용한 관람 및 체험 활동을 통하여 단양군의 우수성을 알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숲 체험, 옛 문화체험, 소달구지·조랑말 체험, 산약초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 위한 사업임

■ 지역 혁신역량 강화

- 지역 혁신역량 강화의 주요 사업내용은 리더 육성,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으로, 사업별 전문가 컨설팅을 수시로 추진하고, 지역리더양성 교육 추진과 워크숍 및 벤치마킹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구 분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관광단양 신성장전략 구축사업	소백산 자연휴양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휴양림조성, 산약초 체험단지 및 판매시설 ■ 명상치유체험센터, 숲 탐방로 등 	2,900
	오곡백과테마 영농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영농단지 조성 - 기반정비, 용수원개발, 저장시설 등 	2,000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이워크시설 조성 : U자형, 말굽형 ■ 짚라인 및 레일바이크 시설 설치 ■ 에코어드벤쳐 및 매가슬라이더 15개코스 	7,350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센터 및 휴게편의시설 설치 ■ 산약초타운 및 농특산물판매장 조성 ■ 백두대간종주 숙박시설 및 홍보관 설치 	7,350
혁신 역량	리더육성 및 컨설팅, 벤치마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샵, 벤치마킹 등 	400

(3) 전략사업 추진체계

- 전략사업 추진체계는 사업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1회 평가하여 성과 분석을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군내 사업 협조 부서를 통한 인·허가사항 검토 등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또한, 분야별로 나누어진 세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집단화된 귀농인의 자발적 결사체인 입주민 대표회 및 전문 자문가, 단양군 등 관계자 위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자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구성도록 함

7) 제천시 : 자동차(수송기계) 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구상

- 현재 제천은 청정자연환경과 교육·문화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경제적 측면의 ‘산업고용 중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근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이 유치되었으나 기업체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특화되고 브랜드화된 ‘클러스터로의 도약’이 필요 함
- 따라서, 지역 잠재성장 동력원인 자동차(수송기계)부품클러스터의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선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성공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전략적으로 선정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의 ‘인력과 기술 그리고 네트워킹의 중심’인 허브(hub)가 내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클러스터 정주체계의 중심’의 허브(herb)를 육성하고자 함



〈그림〉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부품클러스터 비전 및 목표

(2) 주요사업계획

■ 클러스터 센터 구축

-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자동차(수송기계)부품 BI센터 건립, 장비구축, 입주 기업 및 클러스터 기업 기술지원 등을 구축하고, 자동차(수송기계)부품기업 및 자동차(수송기계)부품기업의(금속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기본재료 가공 산업) 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 클러스터 센터 구축 및 Post-BI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기술개발 지원

- 클러스터 회원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핵심 자동차(수송기계)부품소재의 전략적 선택, 수요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구매조건부)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현장의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학의 장비, 자동차부품연구원, 충북TP 센터 장비 등을 연계 H/W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애로를 해결토록 하고 있음

■ 일반기업 지원

-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장 실무지원을 하고, 기술개발 완성도 제고, 시제품제작지원 및 제조업 현장의 환경개선지원을 통한 클린산업단지를 구현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업 자동화지원 및 QWL(Quality of Working Life)지원, 제조업 생산현장의 클린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케팅 지원

- 부품산업의 해외 수출증진 도모를 위한 국내외 전시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외 자동차 및 관련부품산업 해외시장을 개척·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글로벌 시장조사분석 대행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을 지원할 계획임

■ 창업보육 지원

-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BI센터 내 입주기업의 보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초기 창업보육지원 활용, 단지 내 입주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정착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입주기업 공동마케팅 및 홍보지원을 활용한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지역 내 고용촉진을 위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산학연계 우수인력을 채용·알선하고 있음. 그리고, 근로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체계 구축 및 실업자, 미취업자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클러스터 운영

- 제1, 제2 산업단지 및 5개 테크노밸 대상 자동차(수송기계)부품분야 홍보를 활용하여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BI센터(Business Incubation : 기술허브) 준공과 함께 향후 관련분야 입주기업의 클러스터 가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제천시 균형발전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의 클러스터 참여유도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내 대학의 산학 중심 전문가 교수를 클러스터 1:1 매칭 활용, 코디네이터 신설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음

구 분	세 부 사 업	사업비(백만원)
클러스터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 부지매입	3,500
	■ 관리동 건립	2,000
	■ 임대공장(Post-BI센터)	2,000
	■ 장비구축 및 운영	1,000
기술개발 지원사업	■ 기술개발 단기/중기	2,300
일반기업 지원	■ 제품경쟁력 강화사업	830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370
	■ QWL지원사업	400
	■ 애로기술지원	550
	■ 금형제작지원	950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참가지원	650
	■ 국내외 시장조사지원	40
	■ 경영컨설팅지원	300
창업보육 지원	■ 초기창업보육지원지원	310
	■ 입주기업공동마케팅	120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혁신역량강화)	■ 교육 및 실습지원	280
	■ 고용지원	420
클러스터 운영	■ 클러스터협의회 운영	27
	■ 클러스터 코디네이터지원	28
	■ 기업유치전담반 운영	35
간접비 및 기타경비	■ 간접비, 기타경비	2,390

(3) 전략사업 추진체계

- Herb & Hub 클러스터추진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Herb & Hub 클러스터운영위원회를 구성(약 15명 내외 : 당연직 5명 포함하여, 연도별 추진 시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 의회, 기업체, 대학, 특성화 고 인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은 행정, 경영, 경제, 기술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산업, 교육, 금융, 마케팅 등 유관기관(업) 관계자로 구성하고 자문, 평가,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 함
- 주관협의체는 제천시청, 시의회, 클러스터사업 추진단 관계자 및 클러스터 회원 기업 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의견반영, 실행검토, 성과자료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 함

1.3 사업평가 방안

-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흡한 사업평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평가체계

- 평가체계는 먼저 사업선정을 위한 선정평가를 실시함
- 선정평가는에서는 균형발전 견인, 성과도출 가능 등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감안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있음
- 그리고 매년 진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진척 실태, 예산 집행 현황 등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의 3년차인 2014년에는 중간평가를 사업진척, 추진과정 적절성, 성과도출 가능성,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평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기여, 성과도출여부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종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임

2) 평가대상 및 주요 점검내용

- 평가대상은 2단계 사업 대상 7개 시·군의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상 전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점검내용는 첫째, 사업추진부분으로 사업목표 시행, 예산확보, 사업추진방안, 타 사업과의 중복성, 시설건축 후 사업관리방안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둘째, 지자체 사업지원 체계부분으로 전담조직 구성, 외부전문가 활용, 사업홍보, 지자체 역할 정도 등을 점검함. 셋째, 혁신역량 강화사업부문으로 혁신역량 강화사업 예산의 효율적 활용, 관련사업의 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넷째, 사업추진 성과부분으로 사업성과 달성을 가능성, 관련 성과지표 구축 정도,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임

3) 평가 방법

- 평가 방법은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주관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시·군)는 지역발전연구센터와 충북도의 평가 준비 요청에 따라 관련 사항(자료, 관련 책임자 등)을 일정에 맞게 준비함. 그리고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시·군) 방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충북도에 제출함

부록 3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도의회보고 회의록

■ 선정지표 관련

- 낙후지역 선정지표(7개 지표) 자체가 중복적인 지표가 많음
 - 예를 들면, 인구감소율로 인해 노령화가 높아지고, 사업체수 또는 의사수도 적어질 수 밖에 없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표 구축 필요

■ 예산지원 관련

- 현재 낙후지역 지원을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차등격차가 크지 않아 의미가 없음
 - 차등지원의 격차를 과감히 높여 낙후지역에 대한 확실한 예산지원 필요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과감히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 2단계 사업에서는 제천시가 추가되어 예산이 상향조정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기존 예산을 나눠쓰는 문제점이 나타남

■ 균형발전방안 관련

- 청주권에 집중된 지자체 산하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을 타 권역으로 분산 할 수 있는 방법 제시 필요
- 북부권·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정책 내용 미흡
- 귀농·귀촌 정책 내용을 더욱 자세히 다를 필요가 있음
 - 조례 제정 외에 귀농귀촌에 대한 특별예산을 추가로 편성 필요
 - 현재 55세 이하 연령층에게만 지원대상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적음. 따라서 지원대상 연령층 상향 필요
- 도에서 가장 우선 순위되는 기업을 낙후지역에 배치하여 지역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읍·면에서 올라오는 균형발전사업과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괴리가 있음
 - 대규모 사업에만 돈을 다 쓰려고 함.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작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함



부록 4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회의록

■ 균형발전방안 관련

- 중앙정부의 국정 정책과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정책이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함
- 일반적인 시군에 대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시군에서 얼마만큼 자금을 확보하고 성과를 내는지 그 부분에 맞춰서 인센티브 전략 필요
- 청원청주 통합시 탄생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임
 - 도민들이 충분히 균형발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앞장서고 가능한 한 민간중심, 시군중심에서 운영하고 균형발전재원을 확충
- 도 차원에서 선천적·후천적 규제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
- 충북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권역(남/북부권) 차원의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필요
- 가능한 한 사업선정시 많은 지역민(농민)이 참여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균형발전사업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균형발전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충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추진되어야 만 성공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역균형발전 포럼 및 현장중심 주민워크샵 관련

-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포럼과 현장중심 주민워크샵 추진 필요
 - 시군 지역민들은 그 지역의 자원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
 - 권역별로 지역 인적+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발전포럼 운영 필요

■ 낙후지역 졸업제도 관련

- 낙후지역 졸업제도와 관련하여 졸업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예산 배분을 해주어야 만 졸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예산지원 관련

- 남부권과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도의 보조금 확대 지원 필요
-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의 상향 필요
- 시도자율편성 중에서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균형발전차원에서 배치된다고 생각되며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

-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시군에서는 재정지원만 요구하지 말고 충북도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함

부록 5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회의록

■ 시·군별 발전방향 관련

- 지역별·권역별 발전영향에 대한 보완 필요

■ 균형발전방안 관련

- 기반시설 사업위주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
- 균형발전사업은 시군에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도에서 선정 후 지원체계로 전환 필요
- 균형발전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지표활용
- 낙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 세포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사업추진 매뉴얼 작성 필요
- 추진과제를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사업 추진 관련

- 현장중심의 주민 워크샵 추진 필요
- 시·군 전문관 제도 도입 필요
-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지역동등 소득창출 및 지역문화활용 사업 추진

■ 균형발전 평가체계 관련

- 평가항목은 세부적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있어서 환류체계 필요
- (가칭)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
 -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부록 6 : 공청회 및 심의 의견 검토결과

공청회 및 심의 의견	검토 결과
낙후지역에 대한 용어 개선	반영(p. 141) - 낙후지역에 대하여 개발가능지역 또는 발전촉진지역 등으로 개선 제시
권역별 출장소에 해당 권역 공무원을 일부 채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반영(p. 145) - 권역별 출장소 기능강화 부분에서 권역별 공무원을 일부 채용할 수 있는 내용 제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예산 확대 필요	반영(p. 153 – 154) - 균형발전 지원예산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및 도비보조금 제도 개선 등의 방안 제시
충북 기본계획과 별도로 권역별 차원의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필요	반영(p. 156) - 남·북부권에 대한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 제시
시군별 발전방향에 대한 보완 필요	반영(p. 128 – 137) - 권역별·시군별 발전방향 제시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소득창출 및 지역문화 활용 사업 추진	반영(p. 171 – 184) - 충북커뮤니티 지원센터 운영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에서 지차에 인적자원과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및 발전방안 제시
시군 읍면별 불균형발전에 대한 사업 추진	반영(p. 171 – 184) -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시군내 낙후 읍면에 대한 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제시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단기, 중기 추진계획 구분	반영(p. 189 – 190) -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

공청회 및 심의 의견	검토 결과
균형발전 평가항목의 세분화와 환류체계 구축	<p>향후 관련 사업추진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사업 평가(매년 시행) 및 3차년도 사업선정(2017년) 추진시 균형발전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균형발전 지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구축하여 활용
균형발전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지표 활용	
지자체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관 제도 도입	<p>반영(p. 1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 제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p>반영(p. 1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제시
균형발전사업 매뉴얼 작성	<p>반영(p. 1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의 가이드 라인 제시를 위한 매뉴얼 작성 제시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포럼과 현장중심 주민 워크샵 필요	<p>반영(p. 168 - 1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포럼과 현장중심 주민 워크샵 추진 제시

